
6·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박종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박종상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국방부 직속의 최고 군사연구기구인 군사편찬연구소는 2000년 9월 1일부로 국내 유일의 군사사 연구편찬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연구소는 1964년 8월에 발족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수행하였던 6·25전쟁 편찬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점차 군사사 연구편찬 기능을 강화하고 몇 차례 기구 개편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사의 연구편찬을 심화하는 한편 정책현안으로 제기 되는 군사문제에 역사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쟁사 및 국방사를 연구편찬하고 군사작전 사료를 조사연구하며, 국내 및 해외의 관련기관에 소장된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여 1948년 정부수립을 하고 국군을 창설하였으며, 1949년 병역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확립되기도 전에 1950년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6·25전쟁이 발발하였던 시점에는 국방부에 병무행정을 담당할 조직조차 없었으며, 전쟁이 발발한 이후 초기의 패배로 인해 지방 행정조직까지 붕괴 되면서 병무행정은 혼란에 빠져 정상적인 병무행정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과 부대의 확장을 위해 병무 행정기구를 재설치하였습니다.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였지만 북한군의 급속한 남진에 따른 임무수행의 제한으로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이후 9월 20일부터 1951년 4월 20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 육군본부 소속으로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재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 병무행정조직을 복원하였습니다.

육군본부 예속으로 재창설된 병무행정기구로서의 병사구사령부는 전쟁 기간 중에 국방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육군본부로 예속 변경되며 다시 육군 제2군사령부로 예속이 변경되었다가 국방부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오늘의 병무행정기구는 이처럼 6·25전쟁 기간 중에 재설치되어 여러 번의 소속 변경과 조직 개편을 거쳐 1962년 병역법의 개정으로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시·도 병무청으로 창설된 것입니다.

이 책은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실무자들에게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6·25전쟁 당시의 병무행정기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관련 분야의 근무자 및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6 · 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I. 머리말	8
II. 국군의 창설과 예비전력의 편성.....	12
1. 상비군의 창설	15
2. 예비전력의 편성	25
III. 병역법의 제정과 병무행정기구의 설치.....	32
1. 병역법의 제정과 공포	32
2. 병무행정기구의 설치	42
IV. 6·25전쟁과 병무행정기구의 개편	48
1. 국방의 전시체제 전환과 전시 병무행정	48
2. 후방지역의 편성관구사령부 설치	51
3. 병사구사령부의 재설치	54
V. 맺음말: 전후 병무행정기구의 변화	64
부 록	
병역임시조치령	68
병역법	77
참고문헌	92

6 · 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I. 머리말



I. 머리말

병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병력충원이다.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수단은 모집, 징집, 소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집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징집과 소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병무행정은 징집과 소집을 어떤기구에 의하여 어떤 절차에 따라 수행되느냐를 살펴봄으로써 그 체제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이한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거쳐 국군(육군, 해군)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1949년 1월 20일 병역임시조치령과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후 국군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10만 편제의 제약으로 인해 1950년 3월에는 징병제가 지원병제로 바뀌면서 1950년 3월 15일 병역과 동원 업무를 담당하던 육군본부 병무국과 병사구사령부가 해체되었다. 따라서 6·25전쟁 발발 시까지 동원업무를 담당할 병무행정부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긴급하게 부대의 확장을 위해 많은 병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미 병사구사령부가 해체되었고, 전쟁 초기의 패배로 지방 행정조직까지 붕괴되면서 병무행정은 혼란에 빠져 병무행정의 핵심인 징집과 소집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매우 제한되었다.

전쟁 초기 전선이 한강이남으로 바뀌면서 국방부는 후방편성을 강화하고 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엄지역에서 제외된 전라남도

와 전라북도에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편성관구사령부의 모병 절차는 병사구사령부와 동일하게 지역에 따른 모집이었다. 그러나 병무행정을 담당할 공무원이 부재하였고 경찰도 전선에 투입되어 정상적인 징병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제2국민병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집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소집절차에 따른 소집을 하지 못하고 가두소집이나 강제모병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북한군이 빠르게 남진하였기 때문에 편성관구사령부는 해체되어 철수하게 되었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전투손실 및 부대의 확장을 위해 많은 신병 및 보충병이 필요하게 되어 국방부는 후방지역의 급속한 동원 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병력확보를 위해 1950년 9월부터 다음 해인 1951년 4월까지 10개 지역에 대해 각 지구별로 병사구사령부를 다시 설치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에 소속된 병사구사령부는 육군본부와 상충되는 업무상의 문제로 전쟁이 끝난 이후 육군본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국군을 창설하고 병역법을 공포하였지만 병무행정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6·25전쟁을 맞이하면서 병무행정기구를 다시 설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군의 창설 및 병역법의 제정과 더불어 6·25전쟁 기간 중에 설치된 병무행정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6 · 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II. 국군의 창설과 예비전력의 편성

- 1. 상비군의 창설 15
- 2. 예비전력의 편성 25



II. 국군의 창설과 예비전력의 편성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하에서 해방되어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가들과 일본군·만주군·중국군·광복군 군사경력자들을 중심으로 국방·군사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1월 미 군정청에 등록된 205개의 각종 정당·사회·군사단체 중에서 사설 군사단체의 수가 약 30여 개에 달하였다. 이들이 군사단체를 조직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광복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행정의 공백을 수습하고 일제의 통치기능을 접수하여 사회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국과 창군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1945년 10월 31일 미 군정청 치안국장이며 점령군사령부의 헌병사령관인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은 미 군정장관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에게 남한에서의 국방경비대(National Police Constabulary) 창설을 건의하였다. 이 계획은 25,000명 규모로 경찰력을 강화하고, 45,000명 수준의 3개 보병사단을 창설하며, 해안경비를 위해 5,000명 규모의 해안경비대를 조직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각 연대에 6명의 장교와 225명의 사병으로 1개 중대를 창설한 후 이를 기간으로 하여 중대에서 대대, 대대에서 연대로 순차적으로 규모를 확대시키는 계획이었다. 조직은 미국식 체제를 따르며 장비는 미군의 잉여장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Ordinance) 제28호(1945. 11. 13.)의 「국방사령부의 설치에 관한 건」에 의해 쉬크 준장을 최고책임자로 한 국방기구인 국방사령부(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를 설치하였다. 국방사령부에는 군무국(Bureau of Armed

Forced)과 경무국(Bureau of Police)이 설치되었으며,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군무국 예하에는 육군부(Army Department)와 해군부(Navy Department)가 신설되었다.¹⁾

국방사령부가 설치되고 난 후 미 군정 당국은 그해 12월 20일 국방사령관 쉬크 준장의 후임으로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을 임명하고 경찰예비대 형식의 조선경비대를 창설하기 위한 ‘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일정한 주둔지를 기준으로 경찰예비대(police constabulary)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미 합참이 1946년 1월 9일 이 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함에 따라 미 군정은 1946년 1월 11일 국방사령부 내에 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을 위한 임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군정법령 제42호에 따라 교통국의 해안경비업무를 국방사령부로 이관하여 경남 진해에 있던 해방병단을 국방사령부에 편입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14일부로 국방사령부 군무국 예하의 육군부와 해군부는 새로이 발족된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남한에서 철수하고 있던 미 제40사단의 위관급 장교 18명이 국방사령부에 편성되어 부임하였다. 미 군정청은 각 도(道)마다 1개 연대씩을 창설하기로 하고 이들 미군 위관급 장교를 군사고문관으로 각 연대에 파견하였다.

미 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29일부로 「군정법령 제64호」를 통해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1946년 3월 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 대표의 항의로 미 군정 당국은 국방 개념을 ‘국내치안’의 개념으로 바꾸었고,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를 통해 국방부라

1)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2), pp.10~11.

는 명칭을 ‘국내경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하였다. 이때 예하에 조선경비국과 조선해안경비국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조선경비대로, 남조선국방경비대사령부를 조선경비대사령부로, 그리고 해안경비대는 조선해안경비대로 명칭을 바꾸었다.²⁾

조선경비대는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부대를 증편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2월 6일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조선경비대의 병력을 50,0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주한미군으로부터 야포를 제외한 보병의 중화기를 제공하며, 그 외의 소요장비는 일본에 있는 미 극동군의 보급창에서 조달하는 요청안을 미 합참에 보고하였다. 맥아더의 요청안은 1948년 3월 10일 미 합참으로부터 승인되었다. 이로써 남한에서는 정부수립을 앞두고 경비대 병력을 50,000명 수준으로 증원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정부수립을 지원하고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NSC 8이 1948년 4월 8일 트루먼(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자 주한미군은 철수 준비를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³⁾ 이후 1949년 3월 22일의 NSC 36차 회의에서 NSC 8/1이 재검토되어 미 대통령은 NSC 8/2로 승인하였다. 여기에는 NSC 8과 달리 50,000명 대신에 65,000명에 대한 군사지원과 경찰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되었다.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은 여전히 NSC 8/2였다.

2) 국방부, 『국방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193쪽.

3)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35.

1. 상비군의 창설

육군의 창설과 확장

조선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의 창설을 시작으로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제8연대가 창설되어 뱀부계획에 의한 창설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조선경비대는 같은 해 11월 16일에 제주도에서 제9연대를 창설하였다.

◇ 연대 창설 현황

부대명	창설일자, 장소	초대 지휘관	부대편성
제1연대	1946. 1. 15. 태릉	정위 채병덕	1946. 9. 1. 연대편성 완료
제2연대	1946. 2. 28. 대전	정위 이형근	1946. 12. 25. "
제3연대	1946. 2. 26. 이리	부위 김백일	1946. 12. 25. "
제4연대	1946. 2. 15. 광주	부위 김홍준	1946. 12. 15. "
제5연대	1946. 1. 29. 부산	참위 박병권	1947. 1. 1. "
제6연대	1946. 2. 18. 대구	참위 김영환	1948. 6. 15. "
제7연대	1946. 2. 7. 청주	참위 민기식	1947. 1. 15. "
제8연대	1946. 4. 1. 춘천	부위 김종갑	1946. 12. 7. "
제9연대	1946. 11. 16. 제주	부위 장창국	1947. 3. 20. 대대편성 완료

1947년 12월 1일에는 기존의 9개 연대를 재편성하여 3개 연대로 편성된 3개 여단을 서울, 대전, 부산에 창설하였다. 1948년 4월에는 새로이 2개 여단 6개 연대가 창설되어 정부수립 전까지 모두 5개 여단 15개 연대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국군에 편입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되었으며, 12월 7일에는 국방부직제령에 따라 조선경비대총사령부도

16 ● 6·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육군총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육군총사령부는 보병 5개 여단(15개 연대)과 지원부대로 편성되었으며, 병력은 장교 1,403명, 사병 49,087명 총 50,490명이었다.⁴⁾ 이후 12월 15일에는 육군총사령부가 육군본부로 개편되었으며, 육군총사령관도 육군총참모장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49년 1월 육군은 제7여단을 창설함으로써 6개 여단 20개 연대로 증편되었다.

◇ 여단 창설 현황

부대명	창설일자, 장소	초대 지휘관	부대편성
제1여단	1947. 12. 1. 서울	준장 송호성	제1·7·8연대로 편성
제2여단	1947. 12. 1. 대전	대령 원용덕	제2·3·4연대로 편성
제3여단	1947. 12. 1. 부산	대령 이응준	제5·6·9연대로 편성
제4여단	1948. 4. 29. 수색	대령 채병덕	제7·8·10연대로 편성
제6여단	1948. 11. 20. 청주	중령 유재흥	
제5여단	1948. 4. 29. 광주	대령 김상겸	제3·4·9연대로 편성
제7여단	1949. 1. 7. 용산	대령 이준식	제1·9·17·19연대로 편성

- * 제1여단은 1947년 12월 28일, 수색으로 이동
 제3여단은 1949년 2월 25일, 대구로 이동
 제4여단은 1948년 11월 20일, 제6여단으로 개편
 제7여단은 1949년 1월 7일 창설 후 2월 1일에 수도여단으로 개칭

국군에 편입된 직후인 1948년 10월부터 연대 증편에 착수한 육군은 여순 10·19사건과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11월부터 급속히 증편되어 1949년 6월 말까지 제16연대에서 제25연대까지 창설되었다. 그러나 제24연대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22연대는 광주의 제4연대와 대구의 제6연대를 각각 해체하여 개편한 것이어서 실제 증설된 연대 수는 7개 연대였다. 여기에 기존 기갑부대가 기갑연대로 증편되어 추가되었다.

4) 국방부, 『국방사』 제1권, 229~230쪽.

◇ 연대 증설 현황

부대명	창설일자, 장소	초대 지휘관	부대편성
제10연대	1948. 5. 1. 강릉	소령 백남권	제8연대 제3대대 기간
제11연대	1948. 5. 4. 수원	중령 박진경	제2·제3·제4·제5·제6연대에서 1개 대대씩 차출 편성
제12연대	1948. 5. 1. 군산	중령 백인기	제3연대 제2대대 기간
제13연대	1948. 5. 4. 운양	중령 이치업	제2연대 일부병력 기간
제14연대	1948. 5. 4. 여수	소령 이영돈	제4연대 1개 대대 기간
제15연대	1948. 5. 4. 마산	중령 조 암	제5연대 1개 대대 병력 기간
제16연대	1948. 10. 28. 마산	중령 박시창	제15연대 1개 대대 병력 기간
제17연대	1948. 11. 20. 시흥	중령 백인엽	제7연대 1개 대대 병력 기간
제18연대	1948. 11. 20. 포항	중령 최 석	제5·제6연대 일부병력 기간
제19연대	1948. 11. 20. 광주	소령 민병권	해체된 제4연대 일부병력 기간
제20연대	1948. 11. 20. 광주	중령 이성가	해체된 제4연대 일부병력 기간
제21연대	1949. 2. 1. 광주	중령 박기병	제19연대 일부병력 기간
제22연대	1949. 4. 15. 대구	중령 오덕준	해체된 제6연대 병력 기간
제23연대	1949. 6. 20. 마산	중령 김종면	제16연대 1개 대대 기간
제25연대	1949. 6. 20. 대전	중령 유해준	제19연대 1개 대대 기간
독립기갑 연대	1948. 12. 10. 서울	소령 이용문	1948. 1. 1. 제1여단 수색대로 발족

1949년 5월 12일에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각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창군 초창기의 목표였던 8개 사단의 창설을 완료하였다. 각 사단은 3개 연대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병력은 총 10,561명(장교 625명, 사병 9,936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방 사단만이 3개 연대를 구성하였으며 기타 사단은 2~3개 연대의 부족한 병력을 유지하였다. 더욱이 장비면에서는 모든 사단이 여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 사단 창설 현황

부대명	창설일자, 장소	초대 지휘관	부대편성
제1사단	1949. 5. 12. 수색	대령 김석원	제1여단의 승격
제2사단	1949. 5. 12. 대전	대령 유승렬	제2여단의 승격
제3사단	1949. 5. 12. 대구	대령 최덕신	제3여단의 승격
제5사단	1949. 5. 12. 광주	준장 송호성	제5여단의 승격
제6사단	1949. 5. 12. 원주	대령 유재흥	제6여단의 승격
제7사단	1949. 5. 12. 용산	대령 이준식	1949. 5. 12. 창설된 수도사단(수도여단의 승격)을 개칭
제8사단	1949. 6. 20. 강릉	준장 이형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
수도경비사령부	1949. 6. 20. 용산	대령 권 준	제1·제17·기갑·포병연대로 편성



해군의 창설과 확장

1945년 8월 21일에 손원일과 정공모는 군사단체인 해사대를 조직하였으며, 9월 30일에 해사대와 조선해사보국단을 통합하여 조선해사협회가 되었다.⁵⁾ 이후 조선해사협회는 11월 11일 약 200명 규모의 해안경비대를 창설하였으며, 해군 창설 요원들은 그 명칭을 ‘해방병단’이라 하였다. 해방병단은 1945년 12월 서울 YMCA 회관에 모병사무소를 설치하고 대원모집에 착수하였으며, 1946년 1월 15일 총사령부를 진해기지에 설치하였다. 해방병단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46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42호」에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방병단은 합법단체로 인정받고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발족하여 해안경비와

5) 해군본부, 『해군30년사: 1945~1975』(서울: 해군본부, 1978), 10쪽.

해상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였다. 해군은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9호 「국군조직법」에 이어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 「국방부직제령」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였다. 해군총참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군의 해상작전을 통할하고, 예하부대·학교·함대를 지휘 감독하며 군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는 해군총사령부로 개칭되었으며, 12월 15일 해군본부로 개편되었다. 해군은 1949년 6월 1일 현재 해군본부 예하에 진해통제부를 비롯하여 인천경비부·목포경비부·목호경비부, 부산기지·군산기지·포항기지, 제1정대·2정대·3정대·훈련정대, 해군사관학교, 인천해군병원, 해병대로 조직되었다.

1950년 3월 2일에는 해군기지에 대한 보호법으로 해군기지법이 공포됨으로써 전신나 내란 시 작전해역에 민간선박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어해면이 고시되어 원활한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49년 1월 말 현재 3,541명(장교 369명, 사병 2,947명, 생도 225명 등 총 3,541명)이던 해군 병력은 3월 초에 4,00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1949년 말부터 1950년 초 사이에 함정세력의 증가와 해병대가 창설되어 1950년 6월 25일에는 7,715명에 달하였다.

20 ● 6·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 조선해안경비대 기지사령부 창설 창설 현황

부대명	창설일자	초대 지휘관	부대편성
특설기지 사령부 (진해기지)	1946. 10. 10.	중위 김성삼	1946. 10. 10. 부사령관제 실시
인천기지	1946. 4. 15.	대위 백진환	1946. 8. 16. 김포지구 경비임무
목포기지	1946. 8. 18.	중위 왕홍경	1946. 8. 18. 서남해안 경비 1947. 6. 21. 제주도 제주수영 설치
목호기지	1946. 8. 22.	중위 정금모	1946. 8. 22. 동해안 경비 1947. 3. 26. 주문진파견대 설치
군산기지	1947. 1. 6.	대위 이상렬	-
포항기지	1947. 2. 8.	중위 한갑수	-
부산기지	1949. 6. 20.	중위 박진동	1947. 7. 1. 여수수영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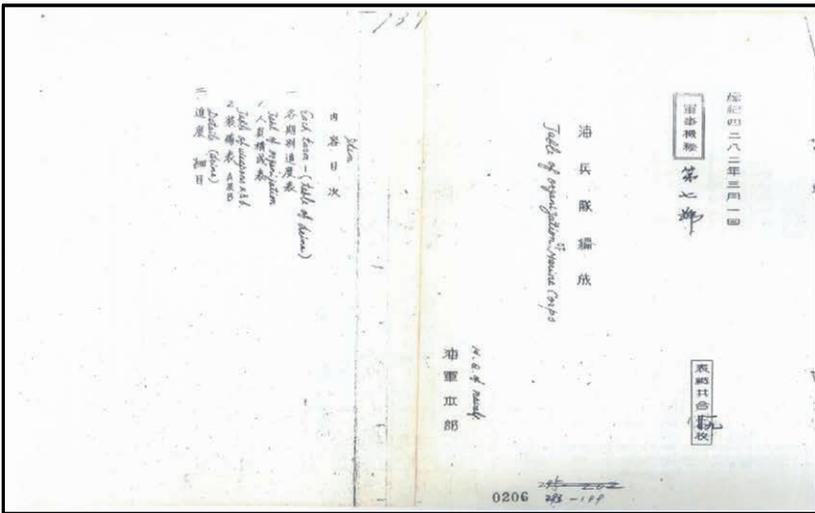
방어해면구역

-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 Defensive Surface Zone)은 전시, 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한 경우 원활한 해양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역으로 대통령(국방부장관)이 선포하며, 긴급 시 합참의장, 해군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이 선포하고 대통령(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 방어해면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상 필요에 따라 발령하는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할통제자는 필요시 방어해면구역 안에서 해안의 굴착,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해운의 영위, 어로 및 채조, 부표·입표·기타 표지의 설치 및 변경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해병대의 창설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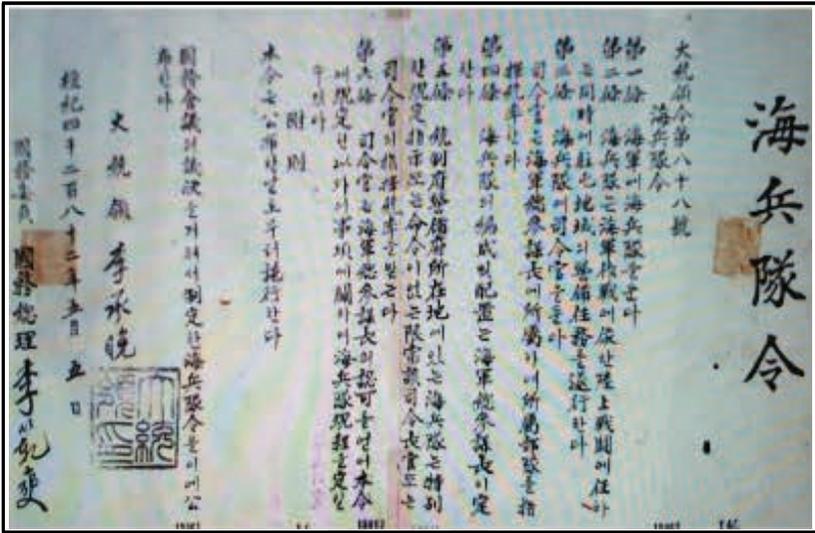
해병대의 창설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여순 10·19사건 진압 경험의 전훈에 따라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해군이 여순 10·19사건 진압 과정에서 해안봉쇄 및 해안공격임무를 맡으면서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 군사극비 제7호(1949. 3. 1.) 「해병대 편성」



해병대의 창설은 1949년 2월 21일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이 진해 통제부 참모장으로 있던 신현준 대령을 해병대사령관에, 통제부 교육부장이었던 김성은 중령을 참모장에 임명하면서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해병대는 4월 15일 장교 26명과 부사관 54명, 그리고 병 300명 등 380명의 병력을 근간으로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해병대 창설의 법적근거는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로 「해병대령」이 공포됨으로써 마련되었다.

◇ 대통령령 제88호(1949. 5. 5.) 「해병대령」



해병대는 창설 초기 해군으로부터 편입한 장교 및 부사관 80명과 신병 300명으로 소총 2개 중대와 사령부(15명), 경리대(15명), 근무중대(70명), 정보대(10명)를 편성하였다. 그 후 1949년 8월 1일 다시 해군 신병 제14기 중에서 440명을 해병대 신병 제2기생으로 특별모집하여 훈련함으로써 2개의 소총중대를 3개 중대로 증편하였다.

부대를 증편한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은 1949년 8월 26일 대구에서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과의 군사협의를 갖고 경남 진주에 소총 1개 대대를 파견하여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함으로써 해병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후 해병대는 1948년 12월 28일에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제주도로 이동한 해병대는 작전을 수행 중 6·25전쟁을 맞이하였다. 당시 부대편성은 2개 전투대대와 독립 2개 중대 및 1개 대전차포소대로 편성되었고, 병력은 장교 66명과 사병 1,100명으로서 총 1,166명이었다. 그러나 장비

는 소총(99식, 38식, 칼빈)과 권총을 제외하면 경기관총 6정, 중기관총 3정, 60밀리 박격포 4문, 81밀리 박격포 2문뿐이었다.

공군의 창설과 확장

통위부는 1948년 5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 위치한 조선경비대 제1여단사령부 내에 통위부 직할부대로 항공부대를 창설하였다. 같은 해 6월 23일 항공부대는 통위부 직할에서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로 예속 변경되어 항공기지부대로 개칭되었다. 항공기지부대는 항공병에 대한 모집을 실시하여 105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78명이 선발되어 보병학교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1948년 7월 12일에 항공병 제1기생으로 정식 입대하였다.⁶⁾

항공병력이 확충되자 1948년 7월 27일 항공부대는 부대 명칭을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였다. 부대도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서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하였다가 9월 1일에는 다시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항공기지부대는 1948년 9월 8일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발족하자 항공기지부대도 육군 항공사령부로 개칭하였으며 사령부 예하에 비행부대(여의도기지)와 항공기지부대(김포기지)를 각각 창설하였다.

6) 공군본부, 『공군사-공군 창군과 6·25전쟁』 제1집 개정판(충남 계룡: 공군본부, 2010), 26쪽.

◇ 항공부대 창설(조선경비대 제1여단사령부 기지, 1948. 5. 5.)



육군 항공사령부는 부대증편에 따라 9월 18일에는 제2기 항공병 398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편입시켰다. 10월에 L-5 연락기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12월 2일에는 여의도기지를 미군으로부터 완전히 인수함으로써 독자적인 비행기지로 발전하였다.

육군 항공사령부는 1949년 1월 14일부로 항공사령부, 항공기지부대 항공비행대 및 항공사관학교로 각각 전문화되어 개편되었다. 그리고 여자항공교육대를 창설하였다. 2월부터 8월 사이에는 항공장교 42명과 항공병 1,192명을 모집하여 육성함으로써 병력을 충원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육군본부에 항공국을 설치하였다.

10월 1일, 육군 항공사령부는 국군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육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공군으로 발족되었다. 이때 공군의 병력은 1,616명이고 항공기는 연락기 14대였다.⁷⁾ 같은 날 공군본부직제령(대통령령 제254호)에 따라 공군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2

7) 이 때 항공기는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해 최초 L-4 연락기가 10대에서 8대로 L-5 연락기는 10대에서 6대로 감소되었다.

월 19일에는 여의도와 김포기지 외에 5개 기지(수원, 군산, 대구, 광주, 제주)에 기지부대를 설치하였다.

공군은 독립 발족 이후 각 교육기관을 통하여 장교 70명, 정비사 78명, 사관생도 97명, 항공병 342명 등을 추가로 모집 육성하여, 1950년 6월 25일 현재, 병력은 장교 242명, 부사관 및 병 1,570명, 군무원 85명의 총 1,897명으로 증가하였다.⁸⁾

당시 조종사 수는 102명이었으나 비행기의 부족으로 42명만이 작전분야에 종사하였는데 그나마 AT-6 연습기는 숙달된 조종사 12명만 조종하도록 제한하였으므로 나머지 30명의 조종사들은 L-4 및 L-5 연락기를 조종하여 비행훈련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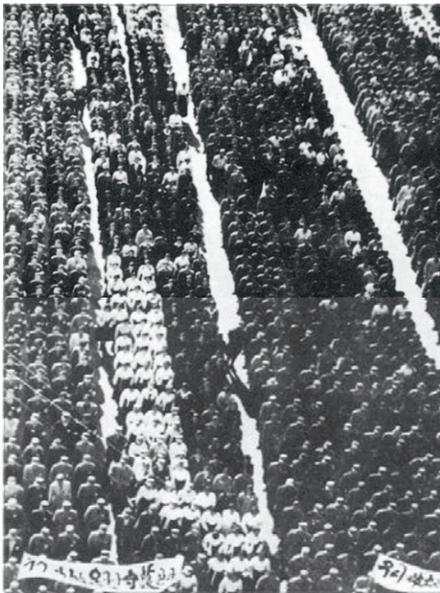
2. 예비전력의 편성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으로써, 제헌헌법 제2장 제30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창군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를 단행(1948. 9. 15.~1949. 6. 29.)함에 따라 국군의 병력 증강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병역제도는 지원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군의 확충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정규군의 확보와 함께 예비병력을 확보하여 정규군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8)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서울: 공군본부, 1962), 64~66쪽.

호국군

국방부는 잉여인력자원을 사전에 예비전력으로 육성하였다가 장차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가 도입되면 현역화 시킨다는 계획 하에 호국군을 창설하였다. 호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육군본부에 호국군무실이 설치되었다.⁹⁾ 그리고 호국군 예하 현역 10개 연대(제1·제2·제3·제5·제6·제7·제8·제10·제11·제13연대)와 해군기지에는 호국군고문부를 두어 실제 부대편성과 교육훈련을 담당케 하였다. 1948년 말에는 호국군의 편성이 거의 완성되었다.



◇ 호국군 창설(1948. 11. 20.)

호국군은 시·군·면 등 행정 구역단위로 중대·대대를 편성하고, 그 조직을 현역부대에 준하여 1개 연대에 3개 대대, 대대는 4개 중대, 중대는 4개 소대, 소대는 4개 분대로 편성되었다. 1개 분대는 12명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호국군 여단의 창설을 계기로 호국군의 부대편성이 완료되자 국방부는 중앙통할기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29일에는 12월 7일에 공포된 국방부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 제10

9) 해군본부에는 1949년 4월 1일에 호군국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5일 해본편명 제10호에 따라 호군국 업무를 중지하고 추진 중인 업무는 함정국으로 이관하였다.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서울: 해군본부, 1970), 1-3, 1-5쪽 참고.

조의 “육군본부에 호군국을 둔다”는 법규에 따라 육군본부 내에 있던 호국군무실을 호군국으로 승격하였다. 1949년 1월 7일에는 호국군 제101·제102·제103·제106여단 등 4개 여단을 편성하고, 1월 10일에 그 예하에 10개 연대(제101·제102·제103·제105·제106·제107·제108·제110·제111·제113연대)를 창설하여 1월 11일부로 각 여단에 편입시켰으며, 약 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¹⁰⁾

1949년 1월 20일에 대통령령 제52호로 병역임시조치령이 공포되었다. 병역관계 제도를 규정한 것은 병역임시조치령이 시초이다. 병역임시조치령은 병역법을 시행할 때까지 병역제도의 임시조치에 관한 긴급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군 복무는 징집이 아닌 지원에 의한 의용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조치령은 병역을 정규군의 현역과 호국병역의 호국병역으로 구분하였고, 호국병역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시 및 사변의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역과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이며, 호국병역 하사관은 3년, 장교는 5년을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국병역은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국군 장교는 대통령이 임면하고 하사관은 연대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직속 단(대)장이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단, 호국병역 소속 장교의 임시적 임면과 호국병역 하사관 등은 편성부대 소속 연대장이 발령하도록 하고 있었다. 간부의 보충과 사병의 모집은 신체검사와 자격심사를 통하여 실시되었는데, 건전한 사상, 건강한 신체, 확실한 보증인, 추천인 등을 통해 채용되었다.

병역임시조치령은 현역과 호국병역의 복역 및 복무, 계급의 임면, 간부후보·사병 모집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소집방법에 있어서는 육군중앙초모위원회를 구성하고 육군과 해군 및 병과 선임

10)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54), 163쪽;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호국군사』(서울: 경희정보인쇄, 2001), 26쪽.

장교로 구성된 위원들이 각 구역의 모병사무를 통괄하고 각 부대에는 초모위원회를 두고 모병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병역 임시조치령은 현역은 물론이고 예비전력으로서의 호국병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호국군 창설의 근간이 되었다.

1949년 7월 16일에는 2개 여단(제107·제108여단) 8개 연대를 증설하여 총 7개 여단 18개 연대로 증편되었다. 총 병력은 계획된 10만 명의 절반에 이르는 5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예비군 확보를 목적으로 창설된 호국군은 1949년 8월 6일 공포된 병역법의 제정과 함께 8월 11일에 각지구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됨에 따라 8월 31일 해체되었으며, 호국군의 인원 및 장비는 육군본부 예비군국으로 인계되었다.

청년방위대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9호에 의한 병역법 제정으로 8월 31일에 호국군이 해체되었다. 병역법 제77조에 의하면 “청년에 대하여는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광복 후 국내에는 청년단체가 난립하여 사회에 적지않은 폐단이 야기됨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대한청년단을 조직하도록 지시하였다. 대한청년단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대부분의 청년을 포함하였으며 여자청년단도 조직하였다. 대한청년단은 서울에 9개 구지부, 전국적으로 10개 도지부, 17개 지방 및 특별지구, 180개 시지부, 4,230개 읍·군 또는 가두지부가 있었으며, 남녀 정규단원수가 2백만 명에 달하였다. 이에 대한청년단은 각 지부로부터 간부요원 720명을 선발하여 2차로 나누어 육군보병학교 배속장교교육대에 입교시켜 40일간의 군사훈련을 이수한 선발된 대원들은 예비역 소위로 임관되었다. 이들

은 각 지부로 배속되었으며 각 지부는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단원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시작하였다.

병역법 제7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1월 초에는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청년방위대가 설치되었다. 육군에서는 청년방위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1949년 12월 15일 육군본부 교도국을 청년방위국으로 개편하였으며, 기간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12월 1일에는 충청남도 온양에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를 설치하였다. 청년방위대 간부훈련학교는 1949년 12월 22일 경기도 수원에 있던 구(舊) 육군보충대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대원을 훈련하는 이외에 간부요원을 선발하여 1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1950년 1월 16일 방위 소위로 임관시켜 배출하는 한편, 보수반을 설치하여 방위대 고급간부가 될 대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호국군 장교들을 입교시켜 2주간의 교육을 이수시킨 후 배출하였다.¹¹⁾

청년방위대의 편성은 1950년 3월 15일에 완료되었다.¹²⁾ 방위대의 편성은 전국 시·도에 지구별로 사단급에 해당하는 방위단(防衛團)을 설치하고, 그 밑에 군 단위로 지대(支隊, 연대급), 면 단위로 편대(編隊, 대대급), 리 단위로 구대(區隊, 중대급) 또는 소대를 편성하였다. 지구별 방위단장에는 방위 중령을, 지대장에는 방위 소령을, 편대장에는 방위 대위를, 구대장에는 방위 중위를, 소대장에는 방위 소위를 각각 임명하였다.

5월 5일에는 육군본부 직할로 17개 단(團) 및 3개 독립단 등 20개 청년방위단의 창설과 이들을 지도할 현역 소령~대령급으로 편성된 훈련지도관을 임명하였다. 청년방위대 각 시도의 방위단장은 대부분 대한청년단 지방단부의 단장급이었다.

그들은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해 설치된 자위대의 주요 간부에 임명되어 경찰과 함께 후방의 치안유지 및 공비소탕작전에 참

11) 병무청, 『병무행정사』 상권(서울: 병무청, 1985), 276쪽.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97쪽.

30 ● 6·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가하였고, 청년방위대 배속장교들은 현역으로 소집되어 전선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청년방위대는 1950년 6월 초까지 그 편성과 준비를 대략 완료하고 교육훈련에 전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10일 방위국을 폐지하고 청년방위대고문단을 설치하여 초대 고문단장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했는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무렵 6·25전쟁이 발발하여 해산되었다.



Ⅲ. 병역법의 제정과 병무행정기구의 설치

- 1. 병역법의 제정과 공포 32
- 2. 병무행정기구의 설치 42



Ⅲ. 병역법의 제정과 병무행정기구의 설치

1. 병역법의 제정과 공포

국방부는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부서로 정식 발족되었다. 정부조직법은 총 6장 및 부칙을 포함하여 49조로 편성되었다. 정부조직법에 나타난 행정부서는 내무부를 비롯하여 11개 부로, 국방부는 이 중 제3장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제17조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국방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탄생되었지만, 국방부의 창설은 1948년 8월 31일에 이루어졌고, 미군으로부터 조선경비대의 지휘권을 인수받은 것은 9월 1일이었다. 그리고 9월 5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각각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으로 편입되면서 국군도 창설되었다.

국군에 대한 호칭은 1948년 8월 16일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훈령 제1호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 오늘부터 우리 육·해군 각급 장병은 대한민국의 국방군에 편성되는 영예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장병 제군은 오직 근면, 진충, 보국의 정신으로 새로운 국방군의 절요(切要)되는 시간을 엄수하며, 직책에 극진하고, 군기를 엄수하여 친애협동(親愛協同)하는 국군의 미덕을 발양하라. …

이처럼 대한민국 국방군으로서 경비대가 국군으로 호칭됨에 따라 이미 육군과 해군으로 호칭하였으며, 8월 24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잠정적 군사 안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통수권 이양과 더불어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고 9월 5일 조선경비대의 명칭이 국군으로 개칭된 것이다.

그러나 정식으로는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군과 해군이 발족되었다.¹³⁾

국군조직법은 총 7장 24개조로 편성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군인의 신분, 제6장 기타,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1948년 12월 7일에는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국방부 본부와 육군 및 해군본부의 직제를 규정한 「국방부직제령」이 대통령령 제37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국방부직제령은 총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국방부직제령은 국방부에 국방부본부와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를 두고, 국방부본부에는 비서실, 제1·제2·제3·제4국 및 항공국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육군본부에는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 호군국 및 11개 감실을 두며, 해군본부에는 인사교육국, 작전국, 경리국, 함정국, 호군국 및 5개 감실을 둔다고 되어 있다. 이외에 국방부 연합참모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수립 이후 국방관계 법령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따라 국방 최고기구인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직제 정비가 이루어지자, 국방부는 제헌헌법 제30조¹⁴⁾에 명시되어 있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시행할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13)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 152쪽; 병무청, 『병무행정사』 상권, 252쪽.

14) 법률 제1호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국방부 각 부서의 업무

- [비 서 실] 부내 기밀사항, 관인, 문서관리, 기타 일반서무 행정관리
- [제1국(군무국)] 군무, 인사, 병무, 흠병, 섭외과로 편성. 국군인사 및 통제, 군비시설 통제, 동원, 병무, 방위, 기타 군행정관장
- [제2국(정훈국)] 행정, 지도, 보도, 조사과로 편성. 장병 사상선도, 정신무장 교육업무 관장, (정훈국으로 출발, 1949년 10월 육군본부로 이관, 12월 15일 환원), 1950년 4월 15일 행정실, 조사, 정훈, 선전, 보도과로 편성
- [제3국(관리국)] 군수행정, 영선관리, 재산관리, 후생, 예산, 경리과로 편성. 각 군 군수사항 통제, 조정, 감독, 국방예산 회계운영, 복지시설, 흠병업무 관장
- [제4국(정보국)] 제1(행정), 제2(동해안지구 담당), 제3(서해안지구 담당), 제4(국내공작 담당)의 과로 편성. 조사, 방첩, 검찰에 관한 사항을 관장. 특히 북한군 및 국내 좌익분자활동의 정보, 첩보수집 평가분석(1949년 5월 9일부로 기구 폐지 각군 정보국으로 이관)
- [향 공 국] 행정, 인사, 기획, 교육, 기술 및 정비과로 편성. 항공운영업무 관장

병역입시조치령

병역과 관련된 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49년 1월 20일의 대통령령 제52호로 공포된 「병역입시조치령」이다. 병역입시조치령은 병역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때까지 병역제도의 입시조치에 관한 긴급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6장 4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국군에의 편입은 지원에 의한 의용병제로 규정하고 병역을 현역과 호국병역으로 구분하였다. 호국병역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시 및 사변의 경우, 지원에 의하여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역과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이었고, 호국병역 장교는 5년, 호국병역 하사관은 3년을 복무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역장교의 임면은 대통령이 발령하고 호국병역 소속 장교와 현역 하사관 및 호국병역 하사관 등은 편성부대 소속 연대장이 발령하도록 하였다. 간부의 보충과 사병의 모집은 신체검사와 자격심사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병원의 모집은 모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만 17세 이상 만 28세까지로 사상이 건실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능력이 우수한 자로서 제대간 연대책임을 질 만한 확실한 보증인과 추천인이 있는 자와 군사교육이나 청년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초모검사에 합격한 자로 충족하도록 하였다.

육군의 간부 및 육·해군의 병원을 초모하기 위하여 육군본부에 육군총참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육군중앙초모위원회’를 설치하여 ‘초모구(招募區)’를 통제하였다. 각 초모구에는 ‘초모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초모구 초모위원장의 통제를 받는 ‘검사구(檢査區)’가 있었다. 검사구에는 ‘초모구모병서(招募區募兵署)’를 설치하여 초모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육군중앙초모위원회의 위원은 육군총참모장이 지명하는 병과장교와 의무장교 및 해군본부에서 파견된 해군장교로 구성되며, 해군본부에서 파견된 해군장교는 해군위원으로서 주로 해군병 모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도록 하였다. 해군 간부요원의 초모사무는 해군본부에 해군중앙초모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였다. 즉, 해군의 초모사무는 병원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간부에 대해서는 해군본부에서 관장한 것이다.

병역입시조치령에서는 공사근무원, 노무자 기타의 피고용자가 국군편입을 지원하여 초모검사에 출두한 때에는 그 책임자 또는 고용주는 왕복일수를 포함한 기간 동안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간부 및 병원의 추천자는 보증인이 되며 해당 간부 및 병원의 제대간 소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장교지원자의 자격 및 보충의 요령

구분	자격	연령표준	보충요령	
현역	특별채용 장교의 군사경력자로서 지식기능이 풍부하여 국군의 중임을 담당할 수 있는 자	1. 장관급 65세까지 2. 영관급 60세까지 3. 위관급 50세까지	채용 후 즉시 임용	
	보통채용	1. 장교의 군사경력자로서 현역 장교로서의 소질이 있는 자 2. 하사관, 병의 군사경력자로서 소질능력이 우수한 자	40세까지	주로 위관급 속성교육 후 임용
		3. 중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현역 장교로서 적합한 자	19세부터 25세까지	정식교육 후 임용
호국병역	특별채용 장교의 군사경력이 풍부하여 각 그 직분에 응하여 국군의 중임을 담임할 만한 수완과 기능이 있는 자	1. 연대장 또는 대대장급 60세까지 2. 중대장급 50세까지 3. 소대장급 40세까지	임시채용 후 약간의 속성교육을 실시하여 정식임용	

보통 채용	1. 하사관, 병의 군사경력자로서 소양능력의 우수하여 호국병역 장교될 소질이 있는 자 2. 군사지식과 통솔지도의 능력이 우수하여 호국병역 장교될 소질이 충분한 자	1. 대대장급 60세까지 2. 중대장급 50세까지 3. 소대장급 40세까지	각 그 소양에 응하여 소요의 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임용
-------	---	---	--------------------------------

출처: <병역입시조치령> 제18조(1949. 1. 20.).

◇ 준사관, 하사관 지원자의 자격 및 보충의 요령

구분	자격	연령표준	보충요령
현역	정식 채용 1. 현역병으로서 진급한 자 2. 호국병역으로서 전역한 자	-	-
	특별 채용 준사관, 하사관의 군사경력자로서 현역 준사관, 하사관 됨에 적합한 자	35세까지	속성교육 후 임용
	보통 채용 병의 군사경력자로서 소양능력이 우수한 자	35세까지	소정의 교육 후 임용
호국병역	특별 채용 준사관, 하사관의 군사경력자로서 소양능력이 우수하여 호국병역, 준사관, 하사관 됨에 적합한 자	38세까지	임시채용 후 약간의 속성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임용
	보통 채용 1. 병의 군사경력자로서 소양능력이 우수한 자 2. 군사지식이 상당하고 통솔지도의 능력이 있는 자	35세까지	소정의 교육 후 정식임용

출처: <병역입시조치령> 제19조(1949. 1. 20.).

병역법

병역입시조치령에 이어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병역법」이 공포되었다. 이 병역법은 1949년 7월 15일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병역법안이 통과되어 8월 6일 공포된 것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병역법이다. 이 법은 여러 나라 병역제도의 장점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전문 8장 8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특징은 남자는 의무병제를, 여자는 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병역법 제1조에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服)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된 여자 및 본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는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그리고 국민병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에서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병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역 및 제2보충역으로, 그리고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다시 분류되어 있다.

징병은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8월 31일까지를 징집연도로 하여 징집연도에 만 20세에 해당하는 남자는 해당 징병구에서 병역심사를 하고,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순서에 따라 병역을 결정받아 징집하도록 하였다. 소집은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시에 소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역병과 소집 중에 있는 예비역 및 예비역 장교 이하 또는 보충병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원호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현역 하사관 및 병과 1개월 이상 소집 중에 있는 예비역과 후비역 하사관, 보충병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및 공과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현역은 현역복무를 지원하거나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와 호국병으로 현역에 편입된 자로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군은 3년으로 하고 복무 기간 중에는 재영(在營)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현역을 필한 후에는 예비병역, 후비병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국민병역에 편입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장정이 현역을 거쳐 마지막인 제1국민병역까지 이르는데 육군과 해군 공히 현역을 포함 18년이 소요되었다.

예비병역은 현역이나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편입되었다. 복무기간은 육군은 6년, 해군은 5년이다. 후비병역은 예비병역을 필한 자가 편입하며, 복무기간은 육·해군 공히 10년이었다.

호국병역은 실역(實役)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에 소집되지 않고, 호국병으로 징집된 자이다. 호국병은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자택에서 기거하며 군 복무를 행하였다.

보충역은 제1보충역과 제2보충역으로 분류되었다. 제1보충역은 실역에 적합한 자로 그 해 소요되는 현역이나 호국병역의 실수요를 초과한 자가 대상이 되며, 복무기간은 육군이 14년, 해군이 1년이다. 제2보충역은 실역 대상자 중 현역과 호국병역, 그리고 제1보충역으로 징집되지 않은 자와 해군에서 제1보충역을 필한 자가 이에 해당되며, 복무기간은 육군이 14년이고 해군은 13년이다.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구분되었다. 제1국민병역은 모든 병역을 필한 현역과 호국병역, 그리고 보충역이 이에 해당되었고, 제2국민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제1국민병역을 필하지 않은 만 17~40세까지의 남자를 말한다. 즉, 제2국민병은 군 복무경험이 전혀 없는 남자가 이에 해당되었다.

◇ 1949년 병역법상의 역종 및 취역 구분

구분	역종	복무연한		취역 구분
		육군	해군	
제1항	현역	2년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역으로 편입된 자가 이에 복무한다. 현역병은 재영한다.
제2항	예비병역	6년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제3항	후비병역	10년	10년	예비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제4항	호국병역	2년	3년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호국병역으로 징집된 자로서 특별한 명령 외에는 자택에서 기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제1보충병역	14년	1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 연소요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무한다.
제6항	제2보충병역	14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역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제7항	제1국민병역	-	-	후비병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역으로 해병역을 필한 자
제8항	제2국민병역	-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

*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출처: 국방관계법령집 발행본부, 『국방관계법령 및 예규집』 제1집(서울: 보성사, 1950), 280~281쪽.

또한 징병검사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만 20세에 달한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집되었다. 소집은 호국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국민병을 전시, 사변, 기타 필요시에 동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병역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인 「병역법시행령」은 1950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281호로 제정되었다. 병역법시행령은 전문 5장 9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토사단을

육성하여 병원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병무행정의 지방행정관서를 행정구역과 경찰관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로 인하여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더구나 병역법은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도 전에 곧바로 사문화되고 말았다. 국군은 1949년 7월에 이미 10만 명에 이르러 더 이상의 지속적인 대규모 충원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1950년 3월 징병제의 시행을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병역법 시행이 유보되고 징집에서 지원제로 전환하게 되자, 1950년 3월 14일 육군본부의 병무국과 각 지역의 병사구사령부가 해체됨으로써 병무행정조직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1949년 8월 6일 공포된 병역법은 그 핵심인 징집에 의한 국민개병제가 시행되자마자 사문화되었지만, 새로운 민병조직을 창설하여 예비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1948년 10월 5일 우익단체들을 통합한 ‘대한청년단’이 창설되었다. 신성모를 단장으로 한 대한청년단은 병역법 제77조¹⁵⁾에 명시된 청년의 군사훈련을 위해 ‘청년방위대’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청년방위대는 1949년 11월 창설되어, 이듬해인 1950년 4월 말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완료하였다. 이들은 비록 6·25전쟁 초기 전투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나 많은 수가 보충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전쟁 초기에 병력충원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6·25전쟁 발발 이전의 징병제는 정부수립 이후에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제정 공포된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49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52호로 공포된 병역 임시조치령과 뒤이어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된 병역법은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근간을 제공하였다. 비록 병역법이 실제로는 징병의 필요성이 없었던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1950년 3월 사문화 되었지만, 이 법은 ‘국민개병제’라는 제도

15) 법률 제4호, 「병역법」(1949. 8. 6.) 제77조: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를 최초로 시도하였고, 특히 전쟁 발발 이후 현재에 이르는 병역 제도의 기본개념을 제공하였다.

2. 병무행정기구의 설치

병역입시조치령은 현역과 호국병역의 복역 및 복무, 계급의 임면, 간부후보·사병 모집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소집방법에 있어서는 육군중앙초모위원회를 구성하고 육군과 해군 및 병과 선임장교로 구성된 위원들이 각 구역의 모병사무를 통리(統理)하고 각 부대에는 초모위원회를 두고 모병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병무행정은 1948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로 공포·시행된 국방부직제령에 따라 제1국(군무국)이 담당하였다. 국방부 제1국은 “국군인사의 통제, 군비, 군비에 관련된 제시설의 통제, 동원, 병무, 방위, 대외교섭, 원호, 무휼 기타 군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되어 있어 병무행정은 제1국의 소관사항에 속해 있었으며 병역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제정과 정책을 수립하였다.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병역법이 공포되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국토방위 의무를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법의 시행과 병사행정의 체계화를 위하여 1949년 9월 1일 육군본부에 병무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호국군 여단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를 기간으로 하여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47호에 따라 서울(경기도 포함), 부산, 대구, 전주, 광주(제주도 포함), 청주, 대전, 춘천 등 8개 지구에 각각 병사구사령부를 설치하여 병무행정과 병력동원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병사구사령부는 지방병무행정기구로서 제2국민병 등록을 비롯한 징병제 실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¹⁶⁾

16) 병무청, 『병무행정사』 상권, 196~197쪽.

◇ 병사구사령부 소재지 및 지휘관

구분	소재지	관할지역	사령관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	서울	서울·경기도	대령 오광선
청주지구 병사구사령부	청주	충청북도	대령 김완룡
대전지구 병사구사령부	대전	충청남도	대령 박시창
춘천지구 병사구사령부	춘천	강원도	대령 장 흥
대구지구 병사구사령부	대구	경상북도	중령 남우현
부산지구 병사구사령부	부산	경상남도	대령 안병범
전주지구 병사구사령부	전주	전라북도	대령 장석윤
광주지구 병사구사령부	광주	전라남도·제주도	대령 김정호

국방부 본부에도 이를 관장할 병무국이 설치되어 병역법에 의한 징병적령자의 등록을 1949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시·읍·면장에게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1950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전국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병역법에 의한 제1차 징집을 실시하였다.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 관할의 경우에 152명이 서울시 용산의 제18연대에 현지입대 하였으며, 경북지구 병사구사령부 관할에서는 징병응소자 51명이 대구의 제22연대에 현지응소하여 입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제1차 응소자는 2,000여명에 달하였다.¹⁷⁾

그러나 병무행정기구로서의 병사구사령부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행정운영면에 있어서 구·시·군 또는 읍·면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었다. 구·시·군 등 지방행정관서의 지도감독 권한은 내무부장관과 특별시장·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내무부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당시 병무행정은 국방부 병무국에서 총괄운영하여 왔으나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징집은 내무부 지방국, 소집은 내무부 치안국과의 상호협조(협의)를 거쳐 운영되었

17) 국방부, 『국방사』 제1권, 286쪽; 병무청, 『병무행정사』 상권, 264쪽.

다. 즉, 국방부의 지시명령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병사구사령부를 거쳐 군부대 및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되었다. 내무부에도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 징집업무는 지방국에서 담당하되 특별시장·도지사(내무국)를 거쳐 구·시·군·읍·면에 시달되었으며, 소집업무는 치안국에서 담당하되 특별시장·도지사(경찰국)를 거쳐 경찰관서에 시달되었다.¹⁸⁾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을 1950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281호로 공포하여 징집에 의한 충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징병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징병관을 두되 최고 징병관은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 병사구징병관은 병사구사령관과 특별시장·도지사, 징모구징병관은 병사구사령관이 임명하는 영관급 장교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로 충당하게 하여 합의제의 징병관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징병사무뿐만 아니라 징집자원의 관리나 기타 분야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 병사구사령관과 특별시장·도지사 간의 상호협약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소집업무를 위해 징병관제도와 같은 특별기구의 설치도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협의해야 할 사항, 국방부장관의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소집업무의 검열권한, 특별시장, 도지사의 소집사무협조의 임무와 구·시·읍·면에 있어서의 소집대상자 상시파악의 임무 또는 경찰서장의 소집영장 전달의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호협조와 지도감독의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병무행정체제는 2원적 체제였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과 병역법에 따라 국방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본부에 호군국과 청년방위국을 설치하여 예비전력을 지

18) 병무청, 『병무행정사』 상권, 185~186쪽.

휘관리하였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역종 구분시 현역 또는 호국군을 필한 자를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구분하였으나 창군 초부터 6·25전쟁이 발발 이전까지 현역을 필한 예비역 자원은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6·25전쟁 발발 이후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이나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제2국민병역의 소집동원은 모두 실역을 필하지 않은 장정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전쟁기간 중 병력동원업무는 병무행정체제와 같은 틀 속에서 시행되었다.



6 · 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IV. 6·25전쟁과 병무행정기구의 개편

1. 국방의 전시체제 전환과 전시 병무행정····· 48
2. 후방지역의 편성관구사령부 설치····· 51
3. 병사구사령부 재설치····· 54



IV. 6·25전쟁과 병무행정기구의 개편

1. 국방의 전시체제 전환과 전시 병무행정

1950년 3월 15일 병역과 동원 업무를 담당하던 육군본부 병무국과 병사구사령부가 해체되었다. 그리고 일부 집행사항은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징모과에, 일부 계획사항은 인사국에 병무계를 설치하여 업무를 각각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6·25전쟁 발발 시까지 동원업무를 담당할 병무행정부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다수의 병력과 장비를 상실하였다. 서울 방어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은 국군은 한강이남에서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7월 5일 제1군단이 창설되어 한강을 도하한 잔존병력을 통솔하게 되었다. 개전 초기의 피해로 병력보충이 시급하였으나 이를 담당할 기구가 없었다. 병사구사령부는 3월에 해체되었고, 전쟁 초기의 패배로 지방 행정조직까지 붕괴되면서 병무행정은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무행정의 핵심인 징집과 소집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매우 제한되었다.

징집은 현역복무 대상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만 20세에 달하는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집은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되었거나 현역 이외의 병역에 지정된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병무행정체계가 개편에 들어간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징집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부득이 예비역과 국민병역을 대상으로 소집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전쟁 중의 병력손실에 대한 보충 및 새로운 부대의 창설을 위한 병력동원을 위해 1950년 9월 26일부터 이듬해인 1951년 4월 20일 사이에 전국 각 도에 10개의 병사구사령부를 창설하여 병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적자원의 전시소요를 체계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병무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51년 8월 14일자 국방부 일반명령 제38호로 정보업무를 담당하던 제4국을 병무국으로 개편하고, 8월 25일에 부산시 수정국민학교에서 병무국을 창설하였다.¹⁹⁾ 창설 당시 병무국에는 행정과·병무과·동원과·원호과 및 병무연구실의 4과 1실을 두고 병무행정, 노무동원, 군사원호와 병역제도연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육군본부 고급부관실의 징모과와 육·해·공군의 군사원호에 관한 기구가 제4국으로 흡수됨에 따라 육군본부에 소속되었던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가 국방부 예하기관이 되었다.

한편 6·25전쟁 초기, 육군본부는 부대를 전시체제로 개편하였다. 육군본부는 전시 임시편제기구로서 각 지역별로 와해된 부대의 재편성과 새로운 부대의 창설을 위하여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편성관구사령부는 전시 병력동원과 후방에서의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병 보충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비전력과 각종 지원부대를 지휘 통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50년 1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국방부는 1950년 12월 21일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를 기간으로 하고 제2국민병역을 대상으로 후방예비부대 성격의 국민방위군을 창설하였다. 국민방위군은 청·장년을 후방의 안전한 지역으로 집단 철수시켜 예비전력 확보 및 장차 전선에 필요한 병력보충원으로 활용한다는 목적하에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은 징집에 대한 문제 및 방위군 간부들의 부정행위에 의한 “국민방위군

19) 국방부, 『국방사』 제2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89쪽.

사건”으로 1951년 5월에 해체되었다. 그리고 그 임무를 5월 5일 부로 창설되는 ‘제5군단(예비)’에 인계하였다.

이후 육군은 예비전력의 지휘통제기구로 창설하였던 제5군단을 해체하고, 1951년 11월 1일부로 육본일반명령 제161호에 따라 병무감실을 신설하였다. 이 기구는 육군본부에서 동원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최초로 설치된 부서였다. 병무감실은 병력보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07연대(예비), 제117연대(예비), 제110연대(예비), 제1보충연대(예비), 제2보충연대(예비), 제3보충연대(예비), 장정대기소(예비)를 통할하였다. 그리고 각 훈련소 입소장정의 보충 및 예비병력의 운용감독과 근무단을 통할하였다. 병무감실의 편성은 제5군단(예비) 인원을 기간으로 하고 초과인원은 육군본부 인사국에서 별도로 조치하였다.²⁰⁾

해군은 1946년 6월 15일에 해방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개편되면서 인사부 내에 병사과를 두고 모병업무를 위주로 한 병사업무를 수행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해군으로 발족됨에 따라 인사부를 인사국으로 개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해군의 지원병 모집은 통제부 및 경비부를 통하여 실시하고 재향군인의 관리업무는 병사구사령부에 위촉하였는데 1952년 2월 1일까지 453명이 등록하였다. 또한 1952년 7월 4일 「학생군사훈련실시령」 공포로 해군 현역장교 14명을 12개의 수산계통학교에 배속하여 비상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²¹⁾

공군은 창군 당시 공군본부 인사국 보임과에서 병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1952년 5월 25일 인사국 내에 계획과가 증설됨에 따라 계획과 내에 병무계를 두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1953년 3월 5일 인사국에 병무과를 신설

20) 국방부, 『국방사』 제2권, 118~119쪽.

21) 해군본부 정훈감실, 『대한민국해군사-행정편』 제2집(서울: 해군본부, 1958), 31쪽.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해병대사령부는 1949년 4월 15일 창설된 이래 사령부 인사과에서 병사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1950년 8월 30일 인사참모실로 개편하였으며, 1952년 1월 18일 인사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1952년 10월 1일 편명 제19호에 따라 행정·사제·보임·상전과 및 병무과의 5개 과로 구성된 인사국으로 증편(장교 21명, 사병 119명)되어 병무과에서 징모 및 예비군업무를 통합 운영하였다.

2. 후방지역의 편성관구사령부 설치

전선이 한강선 이남으로 바뀐 1950년 6월 30일부터 국방부는 새로운 국본 일반명령으로 부대의 개편 및 증·창설에 관한 조치를 반복하였다. 일반명령은 부대창설의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편제와 기능을 규정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원과 장비의 보충은 편성 및 장비표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당시의 일반명령은 이와 같은 절차없이 시행되었다.

1950년 7월 8일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방부는 후방편성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엄지역에서 제외된 전라남도 와 전라북도 지역에 편성관구사령부의 설치를 계획하였다. 이것은 전시체제하에서 병력충원 및 후방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50년 7월 8일부로 육군 제3군단을 창설하고, 같은 날 전북지구편성관구·전남지구편성관구를 창설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7월 7일부로 국본 일반명령(육) 제3호에 따라 편성된 제7사단을 7월 8일부로 전북지구편성관구에, 제5사단을 전남지구편성관구에 편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육군병참학교, 육군병기학교, 육군통신학교, 육군헌병학교, 육군경리학교, 육군남산학교, 육군공병학교 등 7개의 병과학

교는 임시로 폐교하고 제3군단에 편입하여 제3군단 편성을 위한 기간요원 및 교육요원으로 충원할 예정이었다. 또한 육군보병학교와 육군참모학교를 임시폐교하고 각각 전북지구편성관구와 전남지구편성관구에 편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 제3군단사령부를 부산에, 전북편성관구사령부를 전주에, 전남편성관구사령부를 광주에 각각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제3군단장에는 전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을, 전북편성관구사령관에는 신태영 소장을, 전남편성관구사령관에는 이응준 소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전남편성관구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참모장에 이형근 준장을 임명하였고, 전북편성관구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원용덕 준장을 참모장에 임명하였다. 전북편성관구 내에서는 민기식 대령이 해편된 제7사단을 새로 편성하고 있었고, 전남편성관구 내에서는 이형석 대령이 해편된 제5사단을 새로 편성하고 있었다. 제3군단은 7월 12일 그 명칭을 영남편성관구사령부로 개칭되었으며, 전남편성관구사령부는 광주지구편성관구사령부로, 전북편성관구사령부는 전주지구편성관구사령부로 개칭되었다.²²⁾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모두 취소되고 군편성관구를 새로이 편성하여 예하부대의 창설 및 개편이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국본 일반명령 제15호(1950. 7. 17.)에 따라 1950년 7월 17일부로 군편성관구를 영남지구편성관구에 창설하고, 군편성관구 예하에 전북편성관구, 전남편성관구, 경북편성관구, 경남편성관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편성관구에는 2개씩의 교육대를 설치하였다. 즉 전북편성관구에는 제1·제2교육대, 전남편성관구에는 제3·제5교육대, 경북편성관구에는 제6·제7교육대, 경남편성관구에는 제8·제9교육대를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영남지구편성관구에 편입되었던 육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4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432쪽.

군 제3사단사령부, 제23연대, 독립 제1대대를 육본 직할로 편입하였다. 이로써 후방지역에는 4개의 편성관구사령부가 편성되었다.

◇ 편성관구별 주둔지

부대명	주둔지	부대명	주둔지
전북편성관구 - 제1교육대 - 제2교육대	전주 / 제7사단 전주 / 제3연대 남원 / 제9연대	경북편성관구 - 제6교육대 - 제7교육대	마산 / 영남지구편성관구 대구 / 신편연대 포항 / 제25연대
전남편성관구 - 제3교육대 - 제5교육대	광주 / 제5사단 광주 / 제20연대 여수 / 제15연대	경남편성관구 - 제8교육대 - 제9교육대	부산 / 제9사단 부산 / 제21연대 마산 / 제27연대

* 군편성관구: 마산 / 영남지구편성관구

출처: 국본 일반명령(육) 제15호(1950. 7. 17.)

같은 날에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를 신설하고 전북편성관구사령관이던 신태영 소장을 보직하여 전북편성관구와 이 지역의 전투 부대를 지휘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채병덕 소장을 영남편성관구사령관으로부터 해임하고 후임에 전남편성관구사령관인 이응준 소장이 경남과 경북의 편성관구를 지휘하도록 하였으나 호남지구의 전황이 긴박하였기 때문에 이응준 소장은 전남편성관구사령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부사령관인 유승렬 대령이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이 전주 근방까지 침입하는 사태에 직면하자 7월 21일에는 전라남·북도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결국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는 7월 24일 해체되었다. 그 후 전선이 낙동강선 전면으로 압축됨에 따라 7월 지연작전 기간 중 영·호남지역에 설치되었던 편성관구사령부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모두 해체하여 국군 제2사단을 기간으로 창설된 대구방위사령부(사령관 이한림 대령)에 편입되었다.²³⁾

2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2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139쪽.

편성관구사령부의 모병 절차는 기본적으로 병사구사령부와 동일하게 지역에 따른 모집이었다. 편성관구사령부는 자체적으로 모병을 실시하였다. 병무행정을 담당할 공무원이 부재하였고 경찰은 전선에 투입되어 병역법에 따른 징병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국민병에 해당하는 인원을 소집하려 하였으나 전쟁 초기의 혼란으로 소집절차에 따른 소집이 제한되어 가두소집이나 강제모병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7월 이후 재편성된 국군의 사단들은 대부분 병력 및 장비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신속한 병력보충을 위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징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빠르게 남진하였기 때문에 편성관구사령부들은 원래 목표로 한 사단 편성을 완료하기 전에 해체되어 철수하여야 했다.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일부지역과 제주도로 축소되면서 부대의 재편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3. 병사구사령부의 재설치

1949년 8월 6일 징병제로의 병역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호국군이 9월 1일부로 해체되었다. 호국군이 해체되면서 호국군사령부의 인원과 기능은 육군본부 예비국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징병제 실시에 대비하여 8개 도청소재지인 서울(경기 포함)·부산·대구·전주·광주(제주도 포함)·청주·대전·춘천에 1949년 9월 1일부로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각각 설치하여 제2국민병 등록을 비롯한 징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49년 9월에 설치되었던 육군본부 병무국과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는 설치된 지 6개월 만인 1950년 3월 15일에 해체되었다.

그동안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에서 수행한 징병업무는 지원제대자 2,000여 명을 충원하기 위해 역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충원한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지원병제도에서 의무병제도로 병역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나 호국군만 해제함으로써 전·평시 향토방위 및 현역 보충원으로 당시 부족한 정규군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고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병력증강을 위한 병원보충이 급격하게 요구되었다. 전쟁 초기의 모병 및 강제 징집과 제2국민병 소집은 군사적 위기를 타개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는 하였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징소집 업무수행을 위해 정상적인 행정체제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950년 7월 이후 실시 예정이던 제2국민병 소집은 소집절차 등 행정절차의 미비로 소집이 중단되고 9월부터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가 재설치 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집은 경북 일부와 경남 일부의 지역에 대하여만 가능하였다. 더구나 피난민의 혼잡으로 인해 병적관리는 물론 법규에 의한 원칙적인 소집조차도 거의 불가능하여 병역법 제58조를 적용한 제2국민병 소집을 위해 가두소집과 각종단체의 집단소집까지 실시하였다.²⁴⁾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전투손실 및 부대의 신·개편으로 군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많은 신병 및 보충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자원입대 및 가두징집을 통하여 병원을 확보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을 사수하고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충반격작전을 개시하여 남한 전역을 수복하고 북한지역의 탈환작전이 개시될 무렵에 군은 후방지역의 급속한 동원체제를 갖추고

24)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서울: 육군본부, 1956), 48~49쪽;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423쪽.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병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병원도 경남·북의 자원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낙동강방어선에서의 총반격작전으로 인하여 남한 전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북한의 수복지역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갔다.²⁵⁾

국방부는 1950년 9월 20일에 경남지구 병사구사령부와 경북지구 병사구사령부의 재설치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각 도별로 병사구사령부를 재설치하여 1951년 4월 20일 전북지구 병사구사령부를 끝으로 10개의 병사구사령부를 재설치하였다.

◇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 재설치 현황

설치연월일	병사구사령부	비고
1950. 9. 20.	경남지구 병사구사령부	
1950. 9. 20.	경북지구 병사구사령부	
1950. 9. 26.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	•1950. 12. 29. 부산시로 이동 •1951. 3. 15. 서울 복귀
1950. 10. 3.	충북지구 병사구사령부	
1950. 10. 16.	충남지구 병사구사령부	
1950. 10. 16.	강원지구 병사구사령부	•창설지, 원주 •1954. 11. 14. 춘천시 이전 (작전지시 제671호)
1950. 10. 18.	경기지구 병사구사령부	•경기도청 내 설치 •1950. 11. 12. 인천시 이전 •1951. 1. 4. 마산시로 이동 •1951. 4. 25. 인천시 복귀
1950. 10. 19.	전남지구 병사구사령부	
1950. 12. 16.	제주지구 병사구사령부	
1951. 4. 20.	전북지구 병사구사령부	

출처: 병무청, 『병무행정사』 상권(서울: 병무청, 1985), 198쪽.

25) 『병무연보-4292』의 “병무연혁” 1950년도 기록에는 10월 20일에 황해·평남 병사구사령부를 창설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① **경남지구 병사구사령부**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방어선에서의 총반격전이 개시된 이후 병원의 보충이 필요하게 되면서 당시에 병력획득이 가능하였던 경남과 경북지역에서 병사구사령부가 재창설되었다. 경남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75호에 따라 1950년 9월 20일 창설되었다.

② **경북지구 병사구사령부**

경북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75호에 따라 경남지구 병사구사령부와 함께 1950년 9월 20일 창설되었다.

③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81호에 따라 1950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에서 육군본부 직할로 창설되었다. 그 후 1950년 12월 29일에 부산시로 이동하였다가 다음해인 1951년 3월 15일에 서울로 복귀하였다. 그 후 국방부 일반명령 제14호에 따라 1952년 2월 29일에 국방부 병사국으로 배속이 변경되었으며, 국방부 일반명령 제412호에 의하여 1953년 11월 6일에 다시 육본직할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④ **충북지구 병사구사령부**

충북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82호에 따라 1950년 10월 3일 창설되었다.

⑤ **강원지구 병사구사령부**

강원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82호에 따라 1950년 10월 16일 창설되었다.

⑥ **충남지구 병사구사령부**

충남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81호에 따라 1950년 10월 16일 창설되었다.

⑦ 경기지구 병사구사령부

경기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199호에 따라 1950년 10월 18일 창설되어 경기도청 내에 설치되었다. 그 후 1950년 11월 12일에는 인천시로 이동하였으며, 1951년 1월 4일에 경남 마산시로 이동하였다가 1951년 4월 25일에 인천시로 복귀하였다.

⑧ 전남지구 병사구사령부

전남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82호에 따라 1950년 10월 19일 창설되었다.

⑨ 제주지구 병사구사령부

제주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124호에 따라 1950년 12월 16일 창설되었다.

⑩ 전북지구 병사구사령부

전북지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96호에 따라 1951년 4월 20일 창설되었다.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는 사령관 밑에 참모장을 두고 행정과, 병무과, 동원과와 획득과의 4개 과로 편성되었다.²⁶⁾ 이렇게 편성된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는 전국 장정의 징·소집 및 동원징모의 업무를 추진하여 그들의 병적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한편 전국의 학생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군인 및 노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원호사업을 담당하였다.

재설치된 병사구사령부는 곧이어 제2국민병 등록을 실시하였다. 1950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등록된 장정은 2,389,730명으로 이는 병역법이 실시된 직후에 실시한 해당인원 4,762,639명의 50%

26) 획득과는 1951. 10. 20.에 증설되었다. 이후 1954. 3. 3.에 동원과를 병비과로 개편하고 3. 30에는 민병과를 증설하였다.

에 해당하였다.²⁷⁾ 징·소집업무는 내무부 지방국 및 치안국과 협조되어 운영되었다. 즉 병무행정체제에서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최고징집관이 되었고, 병사구사령관과 특별시장 및 각 도 도지사는 병사구징병관이 되었으며, 구청장, 시장, 군수와 병사구사령부 영관급 장교도 징병관이 되었다. 징·소집업무는 2원적 체제로 운영되었다. 즉 국방부는 인력관리를 위한 계획업무를 수행하고 징집(지방국)과 소집(치안국)업무는 내무부가 담당하였다. 제2국민병의 소집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특별시장 및 각 도 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²⁸⁾

1950년 11월 말부터 후방지원의 동원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제2국민병 대상자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들을 소집하여 12월에 국민방위군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병력소요는 이들 제2국민병의 소집으로 충당되었다. 다만 1950년 11월 11일 국무회의의 의결로 초·중·고등학교의 정교사는 제2국민병 소집 유예의 대상이 되었다.²⁹⁾

재설치된 병사구사령부는 임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체제를 갖추기도 전에 중국군 개입으로 인하여 후방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1951년 봄 제2차 총반격작전으로 남한 전역이 다시 탈환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51년 5월 25일 병역법 부분개정 이후 제2국민병 소집절차는 국방부와 내무부의 이원화된 체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방부가 소집인원을 확정하여 육군본부에 하달하면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구사령부에 전달하였다. 병사구사령부는 이를 서울특별시청과 각 도청에 통보하였다. 실질적인 영장 발부 업무는 서울특별시 및 각

27)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49쪽.

28)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지』(서울: 국방부, 1951), C 66쪽.

29) 국방부, 『국방사』 제2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303쪽.

도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현역 확정이 된 장정은 병사구사령부가 지정한 장소로 출두하여 군산, 여수, 포항 등 세 곳의 보충연대에 입소하였다.

그 후 병사구사령부는 1951년 8월 25일 국방부 병무국이 설치됨에 따라 그 다음 해인 1952년 2월 25일에 국방부 병무국에 배속되었다. 그 이유는 군이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병원 양성을 위하여 1952년부터의 군 편제확장과 병력증가 계획에 따라 제2훈련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제1훈련소 1일 입소병력 300명을 500명으로 증원하게 됨에 따라 병원소집업무가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집업무 추진 여하가 군 전반의 증설문제를 좌우하는 것이었으므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동시에 육군본부에서는 국방부 병무국과 함께 전 육군의 병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육군본부 병무감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군조직법은 국방부가 직할부대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구사령부의 소속을 육군본부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방부가 병사구사령부를 통제하면서 육군본부의 지시와 상충되는 업무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3년 9월 15일에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412호로 병사구사령부를 다시 육군본부 직할로 변경하였다.

◇ 1951년도 각군 충원상황 총괄표(1951. 12. 31. 현재)

구분	징소집계획	영장발부	응소자 인원수	인계	
				계	계획대 부족수
서울	1,000	1,612	1,143	992	-8
경기	3,500	5,250	4,811	3,805	+305
충북	10,000	14,519	13,208	9,309	-691
충남	18,000	31,089	29,187	17,994	-6
전북	30,300	74,078	57,024	26,912	-3,379
전남	37,200	66,315	54,099	38,779	+1,579
경북	14,500	26,922	22,155	13,720	-780
경남	14,100	53,259	36,265	13,865	-235
강원					
제주					
계	128,600	273,044	217,892	125,385	-3,215

출처: 『병무연보 1959』, 114~115쪽.

◇ 1952년도 각군 충원상황 총괄표(1952. 12. 31. 현재)

구분	징소집계획	영장발부	응소자 인원수	인계	
				계	계획대 부족수
서울	6,721	9,237	7,437	6,308	-413
경기	26,195	30,856	28,696	26,233	+38
충북	21,340	28,514	25,400	20,975	-365
충남	39,544	69,972	53,776	39,234	-310
전북	29,000	57,960	39,475	28,495	-505
전남	39,200	73,962	53,812	39,199	-1
경북	46,665	74,149	60,359	44,669	-1,996
경남	46,855	108,031	63,180	43,685	-3,170
강원	17,550	25,743	23,363	17,551	+1
제주	1,100	1,179	1,117	1,094	-6
계	274,170	479,648	356,615	267,443	-6,727

출처: 『병무연보 1959』, 120~121쪽.

62 ● 6·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 1953년도 각군 충원상황 총괄표(1953. 12. 31. 현재)

구분	징소집계획	영장발부	응소자 인원수	인계	
				계	계획대 부족수
서울	13,419	30,506	12,083	8,614	-4,805
경기	44,716	63,118	53,491	43,547	-1,169
충북	25,211	43,044	36,509	24,210	-1,001
충남	48,597	77,899	65,724	48,840	+234
전북	45,007	55,180	45,364	42,235	-2,772
전남	69,815	117,038	80,841	65,830	-3,985
경북	74,537	130,671	87,917	71,237	-3,300
경남	67,375	213,532	73,721	51,599	-15,776
강원	31,473	47,044	35,338	26,843	-4,650
제주	3,132	5,337	4,404	3,128	-4
계	423,302	783,369	495,347	386,083	-37,219

출처: 『병무연보 1959』, 128~129쪽.



V. 맺음말: 전후 병무행정기구의 변화



V. 맺음말: 전후 병무행정기구의 변화

상비군으로서의 국군이 창설된 이후 병무행정은 1948년 12월에 공포된 국방부직제령에 따라 국방부 제1국(군무국)이 담당하였다. 이후 1949년 8월 병역법이 공포되어 육군본부에 병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예비전력으로 편성되었던 육군본부의 호국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전국 8개 지구에 병사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병사구사령부는 지방병무행정기구로서 제2국민병 등록을 비롯한 징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국방부에도 병무국을 설치하여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50년 3월 징병제가 지원병제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병무행정기구들은 모두 해체되었다.

6·25전쟁 기간 중에 병사구사령부가 재창설되었지만 여러차례에 걸쳐 소속이 변경되었다. 1950년 9월 20일부터 1951년 4월 20일까지는 육군본부 예속하에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가 재설치된 이래, 1952년 2월 29일에는 국방부 일반명령 제14호에 따라 국방부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1953년 9월 15일 국일명(육) 제412호에 따라 국방부 배속에서 다시 육군본부로 예속이 변경되었다. 이후 육군 제2군사령부로 예속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국방부로 예속이 변경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1962년 10월에 해체되었다.

1950년 6·25전쟁의 발발로 인한 일대 혼란을 비롯하여 빈번한 예속변경과 특히 내무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이원적 행정체계에 의한 복잡성은 병무행정의 취약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무행정 전담기구의 설치는 건군 이래의 현안으로 되어 왔던 바, 1950년대 말에 이르러 국방부가 일반민간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하여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병무행정업무에 대해 내무부 이관을 결정하였다.³⁰⁾

30) 병무청, 『병무행정사-하권』(서울: 병무청, 1985), 42쪽.

◇ 병무행정기구의 변천

년월일	기구명칭
1948. 12. 7. (대통령령 제37호)	•국방부 제1국(병무행정 전반 관장)
1949. 9. 1.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	•육군본부(병무국 창설) •직할 시도에 병사구사령부 설치
1952. 2. 29. (국방부 일반명령 제14호)	•병사구사령부 예속 변경 - 육군본부 → 국방부
1953. 7. 28. (대통령령 제814호)	•국방부 제4국에서 병무행정 관장 - 징집, 소집 기타 병력동원 - 청원경찰, 군사교육, 재향군인의 지휘감독 - 병사구사령부와 소속단체의 지휘감독 -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그러나 1962년 병역법 개정에 의하여 시·도에 병무청이 창설되자, 내무부이관안은 자연스럽게 폐기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병무행정기구로서 선병위원회제도(Selective Service System)가 소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구로서 병무청의 창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논리로서는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인 교육은 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청에서, 납세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각각 독립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군부대는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병무행정의 중간통합기관으로서 병사구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부 직속 하에 시·도급 특별행정기관으로 병무청의 설치를 구상하게 되었다. 때마침 추진 중에 있었던 병역법개정안(1962. 10. 1. 법률 제1163호)에 이를 반영시켰던 바 법안심의과정에서 시·도 병무청 신설에 소요되는 재원염출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1962년 10월 15일 시·도 병무청이 발족을 하였다.

시·도 병무청은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이 원칙이나 그 전신이 병사구사령부였으므로 당분간 군인(군무

66 ● 6·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원을 포함한다)의 배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1962년 11월 15일을 전후하여 초대 청장에 현역 육군대령이 보직되고 뒤이어 부청장에는 국방부 일반직 사무관 중에서 선발하여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하였다. 다만, 제주도 병무청장은 청장이 육군중령이고 부청장을 두지 않았다.

◇ 연도별 시·도 병무청 공무원 정원 현황

구분	'63. 5. 22. (10개청) 창설 당시		'64. 5. 22. (10개청) 대통령령 제1814호 정원령	'65. 1. 11. (10개청) 대통령령 제2033호 정원령 개정	'66. 3. 12. (10개청) 대통령령 제2461호 정원령 개정	'67. 5. 18. (11개청) 대통령령 제3081호 직제개정	'68. 7. 5. (11개청) 대통령령 제3504호 직제개정	'69년도 (11개청) 정원개정 없음	'70. 2. 28. (11개청) 대통령령 제4689호 직제개정
	예산 정원	정원							
일반직	208	812	744	744	744	789	789	789	866
기능직	28	68	68	68	68	75	75	75	75
군인	1,130	1,130	1,130	1,130	117	125	125	125	-
군속	-	-	-	-	76	76	76	76	76
합계	1,408	2,010	1,942	1,942	1,005	1,065	1,065	1,065	1,017

* 창설 당시 정원에 의하면 일반직에는 2을 9, 3갑 10, 3을 39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군인 중 장교는 115명이었다.

한편, 시·도 병무청에는 총무과·징모과·동원과 및 병적관리과 (제주도 병무청은 서무과·병비과 및 병적관리과)를 두게 하고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직하되 징모과장은 당분간 영관급 현역장교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 병무청 창설 당시에는 ping직원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무원·군인·군무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이 특징이기도 하였으나 별정직은 점차 일반직으로 대체하여 1965년에는 청장을 부이사관으로 대체하였으며, 계속하여 징모과장과 ping직원도 1970년 초까지 전원 일반직으로 대체하였다.³¹⁾

31) 병무청, 『병무행정사-상권』, 204~205쪽.

부 록

병역임시조치령.....	68
병역법.....	77
참고문헌.....	92



병역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호, 1949년 1월 20일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은 병역법을 시행할 때까지 병역제도의 임시조치에 관한 긴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령에 의한 국군편입은 지원에 의한 의용병제로서 한다. 지원은 개인으로서의 지원에 한한다.

제3조 본령에 의하여 모집된 병원의 병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2. 호국병역

제4조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전시, 사변의 경우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別)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2장 복역 및 복무

제5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무년한 및 취역구분은 아래와 같다.

1. 현역의 복무년한은 2년으로 하고 현역병으로 모집된 자와 호국병으로서 현역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 (단, 호국병으로서의 복무연한과 현역으로서의 복무연한은 통산한다)
2.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호국병으로 모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호국병은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근무와 교육훈련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재영계할 수 있다.

3. 호국병역에 있는 장교의 복무연한은 5년, 하사관의 복무 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복무는 각 현역에 있는 장교와 하사관에 준한다.

제6조 국군의 장병은 현역을 선위로 보충하고 호국병역의 병적 편입을 차위로 한다.

제7조 국군의 장병은 그 채용된 날로부터 그 소속연대의 병적에 편입한다.

육해군본부총참모장은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병의 병적의 소재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호국병역 각 부대소속의 장병의 병적은 해부대의 편성담당 현역부대장이 관리한다.

제9조 장병은 상이,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이 있어 군무를 감당치 못할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군무에 적당하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개인의 사정 기타 여하한 사유로서든지 그 병역을 면제할 수 없다.

제3장 계급 및 임면

제10조 국군간부의 임면은 장교는 대통령이 발령하고 하사관은 연대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직속단대장이 발령한다. 단, 호국병역소속장교의 임시적 임면과 동 하사관의 임면은 기편성담당연대장이 발령한다.

제11조 국군소속 병원은 입대일로부터 사령장없이 3등병을 피명(被命)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호국병역에 있어서의 장교 이하의 계급은 현역장교 이하에 준한다. 단, 호국병역에 있어서의 계급은 현역에 있어서의 계급과 통용하지 못한다.

제4장 간부의 보충과 병원의 모집

제1관 통칙

제13조 간부 및 병원은 사상건실, 신체건강, 능력우수한 자로서 재대간 연대책임을 질만한 확실한 보증인과 추천인이 있는 자 중에서 이를 선발 채용한다.

제14조 간부 또는 병원으로 입대를 결정한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하여 입대기일에 입대치 못할 경우에는 31일(호국병역에 있어서는 20일) 이내 입대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사고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차기에 입대케 하거나 또는 복역을 면제한다.

제15조 간부 또는 병원으로 입대한 자가 입대 직후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31일(호국병역에 있어서는 20일) 이내에 치유할 가망이 없거나 또는 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퇴대케하여 차기에 입대케 하거나 복역을 면제케 한다.

제16조 국군장병지원자의 지원과 초모검사(신체검사와 자격심사를 총칭한다)는 지원자의 거주지 초모구에서 행한다. 단, 장교 지원자에 한하여 중앙초모위원회의 재심을 요한다.

제2관 간부의 보충

제17조 간부의 보충은 지원자 중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부합한자로서 초모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로서 한다. 단, 호국병역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필하기 전 임시채용할 수 있다.

제18조 장교지원자의 자격 및 보충의 요령은 좌표와 같다.

역종	현역		호국병역		
	특별채용	보통채용		특별채용	보통채용
자격	장교의 군사경력자로서 지식기능이 풍부하여 국군의 중임을 담당할 수 있는 자	1. 장교의 군사경력자로서 현역장교로서의 소질이 있는 자 2. 하사관, 병의 군사경력자로서 소질능력이 우수한 자	3. 중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현역 장교로서 적합한 자	장교의 군사경력이 풍부하여 각 그 직분에 응하여 국군의 중임을 담당할 만한 수완과 기능이 있는자	1. 하사관, 병의 군사경력자로서 소양능력의 우수하여 호국병역 장교될 소질이 있는 자 2. 군사지식과 통솔지도의 능력이 우수하여 호국병역 장교될 소질이 충분한 자
연령표준	1. 장관급 65세까지 2. 영관급 60세까지 3. 위관급 50세까지	40세까지	19세부터 25세까지	1. 연대장 또는 대대장급 60세까지 2. 중대장급 50세까지 3. 소대장급 40세까지	1. 대대장급 60세까지 2. 중대장급 50세까지 3. 소대장급 40세까지
보충의 요령	채용 후 즉시 임용	주로 위관급 속성 교육 후 임용	정식교육 후 임용	임시채용 후 약간의 속성교육을 실시하여 정식임용	각 그 소양에 응하여 소요의 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임용

제19조 준사관, 하사관 지원자의 자격 및 보충의 요령은 좌표와 같다.

역종 채용 구분	현역			호국병역	
	정식채용	특별채용	보통채용	보통채용	특별채용
자격	1. 현역병으로서 진급한 자 2. 호국병역으로 전역한 자	준사관, 하사관의 군사경력자로서 현역 준사관, 하사관 됨에 적합한 자	병의 군사경력 자로서 소양능 력이 우수한 자	준사관, 하사관의 군사경력자로서 소양능력이 우수하여 호국병역, 준사관, 하사관 됨에 적합한 자	1. 병의 군사경력 자로서 소양능력이 우수한 자 2. 군사지식이 상당하고 통솔지 도의 능력이 있는 자
연령 표준	-	35세까지	35세까지	38세까지	35세까지
보충의 요령	-	숙성교육 후 임용	소정의 교육 후 임용	임시채용 후 약 간의 숙성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 임용	소정의 교육 후 정식임용

제20조 전 2조의 규정의 연령표준은 지원자의 정신, 체력 및 기술능력 등이 특히 우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관 병원의 모집

제21조 병원은 모집 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만 17세로부터 만 28세에 달하는 자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자 중 초모검사에 합격한 자로서 충족한다.

1.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
2. 군사교육을 받은 자
3. 청년단체 등에 있어서 훈련을 받은 자

제4관 초모구 및 초모관

제22조 간부 및 병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초모구를 두고 초모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초모구를 다시 검사구로 구분한다.

초모구의 구역은 육군총참모장이 검사는 제23조에 규정한 초모구초모위원장이 각 이를 정한다.

제23조 육군의 간부 및 육, 해군의 병원을 초모하기 위하여 육군본부에 육군중앙초모위원회를 각 초모구에 초모구초모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24조 육군중앙초모위원회의 위원장은 육군총참모장으로서 총당한다.

위원장은 감독모병관으로서 부위원장 이하의 초모사무를 통리한다.

부위원장은 육군총참모장의 지명하는 선임병과장교로서 총당한다.

부위원장은 중앙초모심사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보좌하여 중앙위원을 지휘하며 초모구에 대한 장병의 인원을 배부하고 장교요원의 재심과 사관구모병관 이하의 초모사무(간부와 병원의 모집검사 및 이에 관련한 사무)를 통리한다.

위원은 육군총참모장의 지명한 병과장교와 의무부장교 및 해군본부에서 파견된 해군장교로 해군본부에서 파견된 해군장교는 해군위원으로서 주로 해군병 모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5조 초모구초모위원회는 각 초모구에 있어서의 좌의 초모사무를 집행한다.

1. 장교요원의 최초의 심사보고
2. 하사관 및 병이 초모

74 ● 6·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제26조 초모구초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사(여)관구마다 육군총참모장이 지명한 사(여)단장 또는 고급병과장교로서 충당한다.

위원장은 사관구모병관으로서 사관 내 초모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각 초모구마다 육군총참모장이 지명한 연대장 또는 병과영관으로서 충당한다.

부위원장은 초모구모병관으로서 담임초모구 내의 초모사무를 집행한다.

위원은 각 초모구마다 위원장의 지명 또는 육군본부에서 파견한 병과 및 의무부장교로서 충당한다.

위원은 초모구모병검사관 또는 초모구모병의관으로서 초모구모병관의 초모사무의 집행을 보좌하며 주로 장교 이하 요원의 자격심사 또는 신체검사를 분장집행한다.

초모구모병의관을 의무장교로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육군총참모장의 인가한 지방의를 대충할 수 있다.

제27조 초모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초모구마다 초모구모병서를 설치한다.

초모구모병서에 사무원을 두어 서무에 종사케 한다.

모병서사무원은 육군하사관, 동 보통문관으로서 충당한다.

제28조 해군의 초모사무는 병원에 있어서는 육군본부에서 간부에 있어서는 해군본부에서 관장한다.

제29조 해군간부요원의 초모사무를 위하여 해군본부에 해군중앙초모위원회를 각 해군 기타 또는 해군총참모장의 지정한 지구에 해군 기타 초모위원회를 설치한다.

전항의 각 초모위원회의 조직과 업무는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30조 감독모병관 이하 초모사무담당관의 관계행정관청 및 경

찰관청에 대하여 초모사무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청구를 받은 행정관청 및 경찰관청은 그 요구에 응하여 초모사무를 원조할 의무가 있다.

제5관 초모검사

- 제31조 모병서의 개설기일, 장고, 취체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모구모병관이 이를 결정한다.
- 제32조 자격심사와 신체검사는 초모구모병서 내에 설비한 검사장에서 이를 실시한다.
- 제33조 자격심사와 신체검사의 표준 및 체격등위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4조 초모구모병관은 초모검사의 사무를 감독하고 검사를 받은 자의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제35조 초모구모병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체격등위를 결정한다.
- 제36조 초모구모병검사관은 초모검사를 받은 자의 자격 및 신상에 관한 심사를 분장한다.
- 제37조 응모자는 모병관의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모병서에 출두하여 소요의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초모검사를 받을 수 없다.
- 제38조 현역병 및 호국병의 병적의 편입처분은 육,해군총참모장의 지시에 의하여 사(여)단장 또는 해군기지사령관이 결정하고 병원의 입대는 국방부장관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특전

제39조 공사근무원, 노무자 기타의 피고용자가 국군편입을 지원하여 초모검사에 출두한 때에는 그 책임자 또는 고용주는 이에 요하는 기간(왕복일수를 포함)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간부 및 병원의 추천자는 보증인이 되며 해 간부 또는 병원의 재대간 소위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장 잡칙

제41조 초모검사를 받은 자와 그 대동자의 여비 및 기타의 비용은 응모자의 자비로 한다.

부칙<제52호, 1949. 1. 2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의 세칙에 관하여는 별로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병역법(법률 제41호, 1949년 8월 6일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는 의무를 진다.

제2조 대한민국 국민된 여자 및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할 수 있다.

제3조 ①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②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병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4조 현역에 복하는 자는 현역병, 예비역에 복하는 자는 예비병역,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호국병, 후비병역에 복하는 자는 후비병, 보충병역에 복하는 자는 보충병, 국민병역에 복하는 자는 국민병이라 칭하고 제1, 제2의 구분이 있는 병역은 각각 제1 또는 제2를 부가하여 칭한다.

제5조 ① 호국병역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편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는 병역에 복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역

제8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역연한 및 취역구분은 하기에 의한다.

항	구분 역종	복무연한		취역구분
		육군	해군	
제1	현역	2년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현역병은 현역재영 중 재영케 한다.
제2	예비역	6년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服)한다.
제3	후비병역	10년	10년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4	호국병역	2년	3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호국병으로 징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호국병은 명령에 의한 외(外)는 자택에 기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	제1보충병역	14년	1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 연소요(年所要)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
제6	제2보충병역	14년,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역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이 제1보충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7	제1국민병역	-	-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으로 해병역(該兵役)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8	제2국민병역	-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가 이에 복한다.

제9조 전조(前條) 제1 내지 제7에 규정한 복역은 기복역연한에 불구하고 연령 만 40세를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병 기타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령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현역병으로서 제7장에 규정한 훈련을 수료한 자의 재영 기간은 1개년 이내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현역병으로서 전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재

영기간은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60일 이내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 현역병으로서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병종에 속한 자의 재영기간은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현역병으로서 재영 중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술, 근무 외의 성적이 우수한 자
2. 정원에 초과된 자

제14조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는 때에는 미입영기간 또는 귀휴기간을 현역 기간 내에 산입(算入)한다.

제16조 호국병역으로서 현역에 편입된 현역병의 호국병역에 복역한 기간은 현역기간에 통산(通算)한다.

제17조 현역, 호국병역 또는 보충병역은 현역병, 호국병 또는 보충병으로 징집한 연도의 9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8조 ① 하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시 또는 사변에 임한 때
2. 출사(出師)의 준비 또는 수비나 경비상 필요한 때
3. 항해 중 또는 외국근무 중일 때
4. 중요한 연습(演習) 또는 특별한 관병(觀兵)을 거행할 때
5. 천재(天災), 지변(地變)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은 차(次)기간에
복합 병역의 기간에 통산한다.

제19조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同一戶籍 또는 寄留簿 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현역을 면제
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轉役)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현역병, 호국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질
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당해병역에 복
할 수 없는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
한다. 단 다른 병역도 감당(堪當)치 못할 자에 대하는 병
역을 면제한다.

제21조 전(前)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轉役)하는 자가 복합
병역의 종류와 복역기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현역병으로서 입영 전 또는 입영 후 6년 미만의 징역 또
는 금고에 처형된 자의 재영 중 형의 집행을 받은 일수
와 재영 중 도망일수는 현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징집

제23조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0일까지(징집연도라 칭한
다)에 있어서 20세에 달한 남자(징병적합자라 칭한다)는
본법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 외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정기의 징병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25조 ① 본적지 또는 기유지의 부윤(府尹),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은 매년 1월 내지 2월 중에 차징집연도 징병적합

자(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에 대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한 등록통지서를 발송하여 출두를 명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통지서를 받은 자는 기일과 장소를 어김없이 출두하여 해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징병적합자가 유고한 때에는 호주 또는 세대주가 이를 대리한다.
- ③ 부윤,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은 기 등록자(요징집자라 칭한다)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6조 부윤,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은 요징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그 정보를 소관병사구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병원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徵兵區)를 설치하고 징병구는 다시 징모구(徵募區)로 구분한다.

제28조 ① 현역병과 호국병의 징집원수는 이를 징병구에 배부하고 이 병원을 다시 징모구에 배부한다.

- ② 전항에 규정한 배부는 징병구 또는 징모구의 요징집자로서의 가정수(假定數)를 기준으로 영달(令達)한다.

제29조 징병구 또는 징모구는 배부한 병원을 당해징병구 또는 징모구에서 충족키 어려울 때는 그 부족수를 다른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제30조 징병검사는 요징집자의 등록지구에서 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한하여는 등록지 이외의 징모구에서 행할 수 있다.

제31조 요징집자가 징병검사를 받을 연도에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차년도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32조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병, 호국병 또는 제1보충병

으로 징집된 자는 다른 징모구로 전속한 경우라도 전속 전의 징모구의 배부인원으로 충당징집한다.

제33조 ①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하기와 같이 구분한다.

1. 실역에 적합한 자
2.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3.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4. 병역의 적부를 판결하기 어려운 자

② 전항에 규정한 구분의 표준은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34조 ①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열에 따라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현역병, 호국병 및 제1보충병의 순서로 이를 징집한다. 단 체격등위가 동일한 자는 본법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 외는 병종마다 추첨법(抽籤法)에 의하여 징집 순서를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속할 병종은 각 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그 신재(身材), 예능 및 직업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 호국병 및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않는 자는 이를 제2보충병으로 징집한다.

④ 현역병 및 호국병으로 징집될 자로서 그 속할 병종이 결정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참가하지 않고 현역병 또는 호국병으로 징집할 수 있다.

제35조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제37조 병역의 적부를 판결키 어려운 자는 징집을 연기하되 그

적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38조 ① 요징집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공중 중일 때
2. 범죄로 인하여 구금 중일 때
3. 형의 집행정지 중인 때
4. 가출옥 중인 때
5. 소년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화원, 교정원 또는 병원에 수용 중인 때
6. 교정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퇴원 중인 때

② 전항의 규정은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아직 징집순서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준용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39조 ①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됨으로 인하여 그 가족(同一戶籍 또는 寄留簿 내에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을 때에 한하여 2년간 징집을 연기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 내에 그 사유가 끝나면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이 지나도록 그 사유가 끝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해의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하여 제1보충병으로 징집하거나 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④ 제1항의 연기기간은 징병검사를 받은 해 9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0조 ① 요징집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 만 26세에 달하기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된 자에 대하여는 재학의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단 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집연기의 사유가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된 기한이 만료되어도 재학의 이유가 끝나지 않은 자는 기한이 만료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1조 ① 외국에 재류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연령 만 26세에 달하기까지 그 징집을 연기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2조 전조의 규정은 국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선원에게 준용한다.

제43조 가족(同一戶籍 또는 寄留簿 내에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2인 이상이 현역병으로 동시에 재영함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1인의 재영기간 중 다른 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제44조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에게 준용한다.

제45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에 입영키 어려운 때 또는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31일 이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제46조 ①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전조에 규정한 입영연기 기간 내에 입영키 어려운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하지 않고 다음에 입영할 기일에 입영케 한다.

② 전항의 규정한 기일에 입영키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7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입영할 때 행하는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31일 이내에 치료할 가망 또는 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귀향케 하고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 외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제45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호국병으로서 호국병역에 편입될 자에 준용한다.

제49조 ① 현역병과 호국병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복역 제1보충병 중에서 그 징병순서를 따라 이것을 보결입영(補缺入營) 시킬 수 있다.

② 제29조의 규정은 전항의 보결입영을 준용한다.

제50조 ① 하기에 계기(揭記)한 자가 징집된 때에는 제30조 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단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자(者)만에 대하여 추첨법으로 징집 순서를 정한다.

1. 제4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41조 제2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제71조 제1항의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6. 제73조의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7. 제74조의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8. 제75조의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② 전조에 제기한 자의 징집순서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자의 순위로 하고 동조(同條)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징집순서는 전항에 제기한 자의 순위로 한다.

제51조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를 아니한다.

제52조 호적이나 기류부 기재의 말소 또는 유루(遺漏) 기타의 사유로 호적이나 기류부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본적이나 기류가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할 때에는 발견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53조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호적 또는 기류부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 미만이 된 때에는 하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1. 현역이나 호국병역 중인 자 또는 현역이나 호국병역을 필한 자
2. 보충병으로서 교육소집인 자 또는 그 소집을 필한 자

제54조 ①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또는 제5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연령 37세를 초과할 때에는 징집을 면제한다.

- ② 전항의 연령은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기산일에 있어서의 연령이다.

제55조 제1보충병으로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호국병의 보결로 충당되어 현역병 또는 호국 병역에 복하게 된 자의 이미 복한 제1보충병역의 기간은 이를 현역 또는 호국병역기간에 통산한다.

제56조 ① 제45조 및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늦게 입영한 자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결로서 늦게 입영한 자라도 그 재영기간의 계산은 늦지 않게 입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범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입영한 자는 예외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연기된 자로 연기기간 내에 소집에 응한 자에게 준용한다.

제57조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대통령령의 정한 기간복역(期間服役)하지 않은 자일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장 소집

제58조 귀휴병(歸休兵), 예비병, 후비병(後備兵), 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59조 ① 귀휴병은 재영병(在營兵)의 보결 기타의 필요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②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을 소집하여 병력이 부족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제60조 ① 예비병 및 후비병은 병무(근무와 연습 등)의 목적으로 예비역과 후비병역을 통하여 8회 이내 소집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규정한 소집은 1년 1회로 하고 1회의 일수는 육군에 있어서는 35일 이내, 해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로 한다.
- 제61조 ① 호국병은 교육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제19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집에 준용한다.
- 제62조 제1보충병은 교육의 목적으로 120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 제63조 보충병으로 군대 교육을 받은 자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64조 ① 병무나 교육에 소집된 자가 소집 중 범죄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병무나 교육을 결한 때에는 그 결한 일수 또는 회수를 병무나 교육일수 또는 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의 기일에 지참(遲參)한 때에 준용한다.
- 제65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및 보충병은 소집되지 아니한 연도에 한하여 매년 1회, 국민병은 필요에 의하여 간열소집(簡閱召集)을 행할 수 있다. 간열소집 1회의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 제66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병무소집 또는 간열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1. 타인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직에 있는 관리 또는 관리대우자

2. 읍, 면, 동회장, 구청장, 병사계, 수입역(收入役) 기타 이에 준할 직에 있는 자
 3. 국회 기타 이에 준할 회의 대의원으로 그 회기 중에 있는 자, 단 소집 중에 있는 자는 국회의원에 한하여 회기 중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4. 외국에 여행 또는 재류(在留)하는 자
 5. 국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선원
- 제67조 ① 소집된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20일 이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소집된 자가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소집 기일에 응소키 어려운 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받은 자가 그 연기기간에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 소집연차를 변경한다.
- ③ 소집된 자가 입영할 때에 행하는 신체검사에 있어서 질병 또는 신체와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치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 소집연차를 변경하거나 소집을 면제한다.
- 제68조 소집된 자가 소집됨으로 인하여 그 가족(동일호적 또는 기류부에 있어 세대를 같이하는 자에 한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소집을 면제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특전

- 제69조 현역하사관에 있는 예비역 및 후비역장교 이하 또는 보충병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원호를 받을 수 있다.

제70조 현역하사관, 병, 1개년 이상 소집 중에 있는 예비역과 후비역 하사관, 병 및 보충병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租稅) 및 공과(公課)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71조 병역 또는 소집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潛匿), 신체 파손, 기타 사위(詐僞)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 공직 또는 의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병역을 면제케 할 목적으로 증명서 또는 진단서에 허위기재를 하여 행사케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3조 ①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에 늦어 10일 내지 20일을 경과할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전시에 있어서 5일 내지 10일을 경과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자 및 소집된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에 준용한다.

제74조 요징집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때에는 4개월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75조 징병적령자 또는 호주나 세대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6조 본 장의 규정은 국외에서 범(犯)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7장 청년의 군사훈련

제77조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제78조 재학 중에 있는 중등학교 이상의 생도 및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제8장 잡칙

제79조 부윤(府尹),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8조에 규정한 병역(제2국민병역을 제외)에 있는 자를 국방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적 또는 기류부의 난외(欄外)에 병역종류의 약부호(略符號)를 부(附)하여 둔다.

제80조 ① 본 법 중 호주에 관한 규정은 호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에게, 호주 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아직 결정되지 못할 때 또는 피치 못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족 중 가사를 담당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세대주에 관하여는 전항에 준한다.

제81조 ① 본 법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는 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科)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병역입시조치령에 의하여 군군에 편입된 자는 본 법이 시행될 때에는 본 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복역을 율(律)한다.

【참고 문헌】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서울: 공군본부, 1962.
- _____, 『공군사-공군 창군과 6·25전쟁』 제1집 개정판, 충남 계룡: 공군본부, 2010.
- 국방관계법령집 발행본부, 『국방관계법령 및 예규집』 제1집, 서울: 보성사, 1950.
-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 서울: 국방부, 1954.
- _____, 『국방사』 제1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 _____, 『국방사』 제2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 _____, 『한국전쟁사』 제2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_____, 『6·25전쟁사』 제4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지』, 서울: 국방부, 1951.
- 병무청, 『병무행정사』 상권, 서울: 병무청, 1985.
- _____, 『병무행정사』 하권, 서울: 병무청, 1985.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서울: 육군본부, 1970.
- 육군본부 전사감실,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서울: 육군본부, 1956.
- 해군본부, 『해군30년사: 1945~1975』, 서울: 해군본부, 1978.
- _____, 『해군편제사』 제1권, 서울: 해군본부, 1970.
- 해군본부 정훈감실, 『대한민국해군사-행정편』 제2집, 서울: 해군본부, 1958.
-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해병12년사』, 서울: 해병대사령부, 1961.
-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호국군사』, 서울: 경희정보인쇄, 2001.

Sawyer, Robert K.,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2.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 저자 박종상(朴宗相)

- 해군사관학교 졸업
- 해병대 전·후방 부대, 해병대사령부/합동군사대/합참 작전본부 등 정책부서 근무
- 現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국제정치학 박사)

□ 주요 저서

- 『6·25전쟁 주요전투』 (공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6·25전쟁 시 군사동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전쟁사와 국방정책 2020-3

6·25전쟁 시 병무행정기구

발행일 2020년 12월 29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 국군인쇄창 편집디자인과
인쇄 국군인쇄창 M20121120



복잡한 타령, 군사기밀 유출, 외국(대) 입산 스파이, 보안사고(위법) 신고는?
국번없이 1337
언제 어디서나

신규유형: 포간첩/테러행·보안사고(위법) 외국통/입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

상급내역: 간첩상: 간첩: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문자로 신고 www.dssc.mil.kr



국방 헬프콜 1303

병영생활 고충 상담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군·광주·일본·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검색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